

발행번호

11-1543000-004005-01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 및 운영실태 분석

2022.02.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CENTER FOR FOOD, AGRICULTURAL & RURAL POLICY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 및 운영실태 분석

2022. 2.



농림축산식품부



사단
법인 **농정연구센터**
CENTER FOR FOOD, AGRICULTURAL & RURAL POLICY

[제출문]

본 보고서를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2.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 황수철

연구책임자

(사)농정연구센터 소장 장민기

연구원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정상택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이도현

(사)농정연구센터 위촉연구원 한민수

[목차]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1.1. 배경	11
1.2. 필요성	12
1.3. 연구 목표 및 방향	13
2. 농업법인 제도 변화	17
2.1. 농업법인 주요 현황 변화	17
가. 농업법인 제도 초기의 상황	17
나. 2001년 이후 농업법인의 주요 변화	18
2.2. 주요국 농업법인 제도 비교	23
가. 주요국별 비교 유의점과 특징적 요소	23
나. 주요국 국가별 농업법인 제도 주요 내용	25
2.3.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화	31
가. 농업법인 제도 변화 총괄	31
나. 농업법인 3대 요소별 제도 변화	38
다.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특례	44
라. [보론]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중소기업과의 조세특례 비교	47
2.4. 소결	51

3. 농업법인 현황 : 통계자료 분석	55
3.1. 방향	55
가. 기본 아이디어	55
나. 통계자료 검토 및 정리	55
다. 분석을 위한 자료 정리	57
3.2. 농업법인의 변화	58
가. 농업법인 개소수, 매출액, 종사인원 변화	58
나. 농업법인 출자 구조 변화	61
다. 대규모 농업법인의 시기적 변화	70
3.3.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73
가. 분석방법 : 이중차분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DID)	73
나. 농업회사법인 :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 효과 분석	75
다. 영농조합법인 : 법인세 면제 범위 축소	80
3.4. 분석결과 검토	85
4. 농업법인 현장조사	89
4.1. 필요성 및 방향	89
4.2. 조사 개요 및 조사 실행	90
4.3. 현장조사 농업법인 특성	92
가. 기본현황	92
나.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별 규모 특성	93
4.4. 현장조사 우수 사례	100
가. 농업생산 및 지원 체계 확립과 신사업 도전	100
나. 축산분야 신사업화와 생산지원 체계 구축	103

다. 농산물 가공과 융복합을 통한 지역 활성화	106
라. 농업생산과 농촌관광휴양사업 융복합화	108
마. 마을·공동체의 공동·융복합 사업 활성화	110
4.5. 현장조사 문제 사례	112
가. 마을공동체 법인의 내부 갈등 및 불철저한 운영	112
나. 출자자의 형식적 구성과 개인농가 혼합 경영	113
다. 농업법인 관리 문제 및 현장 애로 사항	115
5. 시사점 및 결론	121
5.1. 분석·조사 결과 요약	121
가. 농업법인 제도 및 통계 자료 분석 결과	121
나. 농업법인 현장조사 결과	124
5.2. 분석 결과의 이해 및 시사점	125
가. 농업법인 제도, 운영 시스템의 동인(動因)	125
나. 극복해야 할 과제	126
5.3. 결론	130
참고문헌	132
부록 : 현장방문 조사표	13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배경

□ 농업법인의 의의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로서 농가(가족농) 체제를 보완하는 조직적, 기업적 농업경영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업법인은 농업생산 이외에 농산물 유통·마케팅, 가공 등 농가 경영을 보완하는 부가가치 영역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온 특징이 있음.
 - 현실적으로 농가(가족농) 중심의 생산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간 결합을 통한 유통·마케팅, 가공 사업을 농업법인 체제로 전개하여 왔음.
- 시설원예, 축산 등 대규모 농업투자가 필요한 영역에서도 농업법인의 활동이 유효하게 전개 되고 있는 상황임.
 - 개별 농가로서는 한계가 있는 자본력을 법인체제를 바탕으로 확충하면서 본격적인 농업경영 관리 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음.

□ 농업법인 제도 변화

-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창설되었음.
 - 당초 영농조합법인은 소규모(1ha미만) 농가들이 결합하여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위탁영농회사는 농민들이 구성한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 서비스 조직으로 구성되었음.
- 이후 농업법인 제도는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및 [농지법] 제정과 1998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2009년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정으로 법제가 바뀌면서 세부 내용이 변화하였음.
 - 1994년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만이 가능했던 영농조합법인에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되었고, 1998년에는 준조합원 출자한도가 폐지 되었음.
 - 1994년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고 농지소유를 허용하였으며 비농업인 출자액 한도도 1994년 1/2에서 2009년에는 90/100까지로 확대되었음.

-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은 1994년 농업인출자 1/2이상, 농업인이 대표사원이고 사원의 과반 → 2009년 업무집행권자 1/3 이상 농업인 요건으로 완화되었음.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는 1998년 3/4 → 2009년 90/100 → 2012년 90/100 및 출자금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8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완화되었음.
- 농업법인 제도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규정한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이외에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도 관련 되어 있음.

1.2. 필요성

- 미래 주체 형성을 위한 농업법인 체제의 재확립
 - 농업·농촌과 한국 경제·사회의 흐름을 보면,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의 규모화·전문화와 다각화된 농산업화의 주체로서 이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농업법인을 통해 규모화·전문화된 농업생산 체제 확보하고, 농산물 유통·마케팅, 가공 등 농관련 산업의 확대·성장에 기여하여 왔음.
 - 전통적인 농업 분야 이외에도 농촌관광·휴양, 사회적농업(치유농업), 농촌돌봄서비스 등 다각화된 부문에서도 조직화된 경영체제도 요구되고 있음.
 - 한편, 농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 농업생산 주체로서 농업법인의 가능성을 적극 확대해야 하는 상황임.
 - 경영주고령화 등 농가경영의 중장기적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대응이 필요.
 - 논농업 및 노지(露地)농업의 규모화·전문화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채소의 스마트농업 시스템 확산 등 생산방식의 근본 변화에도 대응해야 함.
 - 또한, 농업경영 승계, 청년농 등 신규 세대의 진입에서 농업법인이 가교(架橋)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은 미래의 농업경영체체로서 새로운 세대 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 농업법인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 문제 이해
 - 농업법인에 대해 농업 내부로부터의 경영체 성장 관점과 농업 내·외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자본 확보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음.
 - 농업법인 경영 체제에 대한 가능성과 발전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외부 자본의 유입 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관점도 존재함.

- 농업용 자산, 특히 농지의 경우 “자산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농업 목적의 농지 매입과 농업자원의 유출·유휴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을 제어해야 하는 과제도 제기되고 있음.¹⁾
 - 농업법인은 일반법인과 구별되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법인임.
 - 국가의 공유재로서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법인이 건전한 농업경영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함.

1.3. 연구 목표 및 방향

□ 목표 및 과제

본 연구는 향후 농업법인 제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계 및 자료 분석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농업법인 제도 변화와 이로 인한 농업법인의 영향을 분석함.
 - 농업법인 ① 출자자 제한 완화 ② 농지 소유 요건 완화의 제도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
 - 주요 제도 변화의 영향을 농업법인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검토 : 농업 외부자본 유입 (출자자 구성 변화), 농지 활용, 투자, 경영성과 등의 영향력 파악.
- 주요한 특성·유형별 농업법인 운영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이해하였음.
 -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로 이어져온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정리하여 2001~2019년간의 농업법인 변화를 통시적으로 파악함.
 - 특히, 제도변화의 주요 시점을 전후하여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변동, 출자자 구조 변동 등을 통계적인 분석하였음.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구성 변화를 중심으로 자료를 점검·분석하였음.
- 농업법인 유형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농업법인 운영의 제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운영 특성과 실태를 확인하였음.
 - 현장조사를 통하여 농업법인의 운영 특성을 사례적으로 파악하여 우수한 경영 특성과 문제 요소를 이해하고, 애로사항 등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함.

1) 경제정의실천연합(2021. 6. 27.), 농업회사법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료집

□ 방향 설정

○ 농업법인 운영 실태 파악에 주력.

- 농업법인을 둘러싸고 제도 검토와 자료 정리 등은 있었으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상하였음.
- 본 연구는 통계자료,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함.

○ 한국 법제와 역사 속에서 농업법인의 역할, 전개 과정을 이해.

- 주요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는 농업생산(=농지소유·임차와 경작)이 중심이 되고 농관련 다각화된 사업을 부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농업법인이 농관련 다각화된 사업을 위한 조직 경영체로서 발전한 특성이 있음.
- 농업법인의 법제는 출자자 구성, 농지소유 요건, 사업 영역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농업법인 체제의 특징을 반영한 실태 이해·파악을 추구하였음.

[표 1] 연구과제 정리표

제안요청서 과제		본 연구 과제	
항목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1.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업인 출자 한도 및 농지소유 요건 완화에 따른 농업외부자본 유입 및 농업법인의 규모 변화 추이 분석 	1.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 제도변화 정밀 분석 • 농업법인 제도변화에 따른 농업법인의 구조, 규모, 운영특성 변화 분석: 시계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 통계조사·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 법인수, 비농업인 출자규모, 법인 매출액 등에서 단절적 변화 발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 통계조사·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제도변화의 영향 분석 및 검증: 통계모형 활용
2. 비농업인 출자비율별 농업법인 운영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업인 출자비율에 따른 주요 사업분야, 농지소유 및 활용현황, 투자유치 방식 등 파악 	2. 비농업인 출자비율별 농업법인 운영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 유형 구분 및 현장조사 방법론 개발: 법인격, 비농업인출자비율, 사업유형 등 핵심 요소 반영 • 농업법인 현장 방문 및 운영현황 정밀 분석: 100개소 대상: 농지소유, 투자유치, 제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업인 출자비율에 따라 표본을 구축, 대표자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 제도변화에 대한 평가 등 정성적 요소 확인 	3. 조사·분석 결과 정리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분석, 실태조사 결과 정리: 농업법인 운영실태 요약 및 명제화 • 시사점: 향후 제도개선에 필요한 검토의제 설정

2. 농업법인 제도 변화

2. 농업법인 제도 변화

2.1. 농업법인 주요 현황 변화

가. 농업법인 제도 초기의 상황

- 농업 생산 및 산업 활동은 전통적으로 “농가(農家)”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경영 체제의 고도화 과정에서 “집단(集團)” “조직(組織)” “기업(企業)” 관점의 농업경영도 등장하여 확대되고 있음.
 - 농업법인 제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도 도입되어 있으며, 조직적 농업경영 체제를 제도화한 것임.
-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에 창설되었으며²⁾, 1994년 7월을 기준으로 위탁영농회사 780개소, 영농조합법인 579개소가 설립되었음.³⁾
 - 1996년말에는 농업회사법인 1,419개소, 영농조합법인 3,487개소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되었음.⁴⁾
 - 농업법인 제도 초기에는 기존 [기계화영농단] 등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의 법인화가 진행되는 양상이었으나, 1994년 42조 농림사업 투용자가 시작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이 급증하는 현상이 있었음.
 - 영농조합법인 설립 개소수가 1993년 230개소, 1994년 1,016개소, 1995년 1,207개소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표 2] 농업법인제도 발족 초기의 연도별 설립 동향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누계
농업회사법인	1	26	60	230	1,016	1,207	947	3,487
영농조합법인	6	59	166	280	338	326	244	1,419
합계	7	85	226	510	1,354	1,533	1,191	4,906

자료 : 김정호(2012), 농업CEO를 위하여 - 농업법인은 한국농업의 활로, 개정증보판, 도서출판 목근통, p50

2) 김정호(2012), 농업CEO를 위하여 - 농업법인은 한국농업의 활로, 개정증보판, 도서출판 목근통 에 의하면 경남 김해 청천흥농사영농조합법인, 충북 옥천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가 각각 1호 등기 법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3) 농림수산부(1994.9.)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 세부실천계획, “시책3 : 농어업의 경영현대화를 위해 농업회사 법인제도 도입” pp54~58

4) 김정호(2012), 같은 자료, p51, 농업법인경영체 관리카드 집계결과 (1997.9.)

나. 2001년 이후 농업법인의 주요 변화

□ 2001년 이후 농업법인 개소수 변화

- 통계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법인조사 자료에 의하면, 활동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2001년 3,146개소였으나, 2019년 2만3,315개소로 7.4배로 증가하였음.

[그림 1] 농업법인 개소수 변화 (2001년~2019년)

(단위 : 개소)



주 : 2018년 이후 통계청 수시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모집단 변경 및 시계열 단절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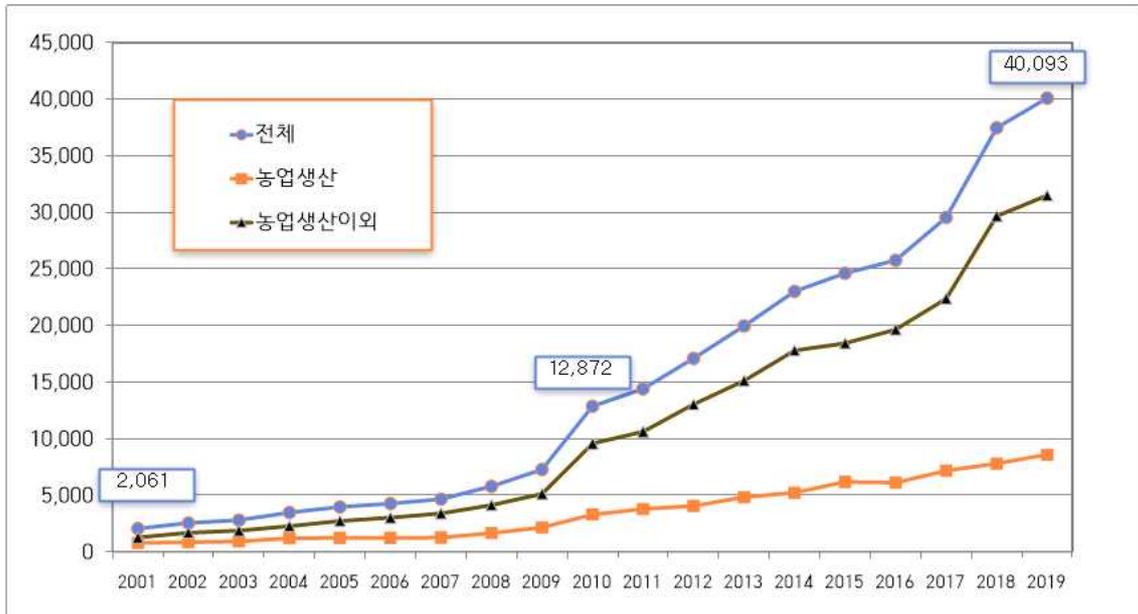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kosis.kr, 농업법인조사

- 농업회사법인은 2001년 798개소에서 2019년 1만3,085개소로 16.4배가 증가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은 같은 기간 2,348개소에서 10,230개소로 4.4배 증가하였음.
- 특이한 점은 2018년 이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개소수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임.
- 통계적으로는 모집단 변경 및 시계열 단절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함.
- 하지만, 기존 추세에서 농업회사법인의 개소수와 매출 규모 등 전반의 수치들이 영농조합법인보다 빠르게 증가해 온 점을 보면,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 보다 다수 조직으로 올라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농업법인 매출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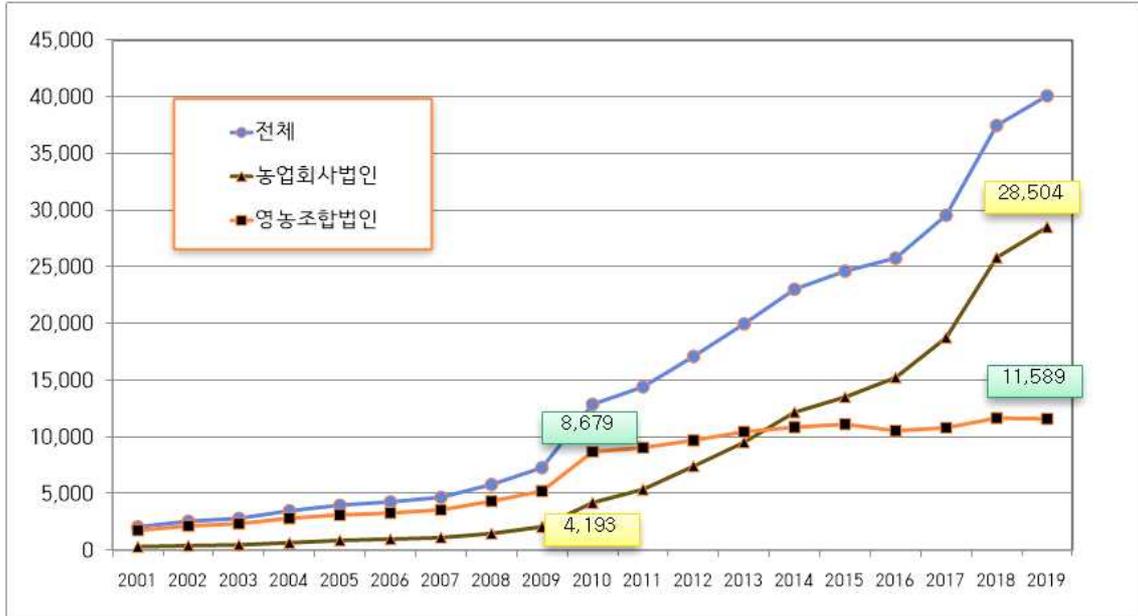
- 농업법인의 사업규모(매출액)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01년 농업법인의 매출 총액은 2조610억원 규모였으나, 2019년에는 40조93억원 규모로 증가하였음.
- 주요한 매출액 증가는 사업부문별로 볼 때 유통, 가공 등 직접적인 생산 이외 사업(농업생산 이외의 사업), 법인적으로는 농업회사법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총액은 2001년과 비교하여 2019년 91.45배 증가한 반면,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총액 6.63배 증가하는 것으로 그쳤음.
 -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유통, 가공 등 농업생산 이외 사업의 매출액 총액은 143.7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 개소당 평균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연차별 변화를 보면 2001년 11.20억원에서 2019년 17.89억원으로 1.60배 증가하는 데 그쳤음.
 - 매출액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모두 2009년 최고치를 보였으며, 이후 약간의 감소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2001~2019년 농업법인 매출 합계액 변화 : 농업생산, 농업생산이외 (단위 : 10억원)



주 : 2018년 이후 통계청 수시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모집단 변경 및 시계열단절이 있음.
 자료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kosis.kr, 농업법인조사

[그림 3] 2001~2019년 농업법인 매출 합계액 변화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단위 : 10억원)



주 : 2018년 이후 통계청 수시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모집단 변경 및 시계열단절이 있음.
자료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kosis.kr, 농업법인조사

[표 3] 2001, 2010, 2019년 농업법인 매출 합계액 변화
(단위 : 10억원, 배)

구분		합계			비교		
		2001 (A)	2010 (B)	2019 (C)	B/A	C/A	C/B
전체	매출액	2,061	12,872	40,093	6.25	19.45	3.11
	-농업생산	791	3,295	8,595	4.16	10.86	2.61
	-농업생산이외	1,270	9,577	31,498	7.54	24.81	3.29
농업회사법인	매출액	312	4,193	28,504	13.45	91.45	6.80
	-농업생산	149	1,088	5,147	7.30	34.51	4.73
	-농업생산이외	163	3,104	23,357	19.10	143.72	7.52
영농조합법인	매출액	1,749	8,679	11,589	4.96	6.63	1.34
	-농업생산	642	2,207	3,448	3.44	5.37	1.56
	-농업생산이외	1,107	6,473	8,141	5.85	7.35	1.26

자료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kosis.kr, 농업법인조사

[표 4] 2001~2019년 농업법인 개소당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시점	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01	1,120	29	15	989	13	1	1,143	32	17
2002	1,236	35	25	1,293	50	26	1,227	32	24
2003	1,329	17	14	1,626	2	0	1,282	20	17
2004	1,529	47	43	2,162	70	50	1,434	43	42
2005	1,709	42	48	2,971	102	102	1,527	34	41
2006	1,680	45	48	2,750	81	67	1,512	40	45
2007	1,728	28	28	2,905	19	-5	1,532	29	34
2008	1,809	31	39	3,100	48	50	1,579	28	37
2009	2,040	43	50	3,697	94	68	1,729	34	46
2010	1,727	33	43	3,134	55	62	1,396	28	39
2011	1,675	35	46	2,778	77	84	1,353	23	34
2012	1,639	11	15	2,720	9	0	1,254	12	20
2013	1,670	4	6	2,735	-8	-24	1,228	9	18
2014	1,774	47	38	2,781	84	63	1,264	28	26
2015	1,651	46	48	2,569	77	68	1,106	28	36
2016	1,742	49	45	2,662	79	60	1,148	30	35
2017	1,792	64	60	2,652	101	80	1,122	35	45
2018	1,814	36	36	2,356	47	37	1,198	23	34
2019	1,789	22	14	2,278	28	8	1,163	14	23

자료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kosis.kr, 농업법인조사

○ 법인별 평균 매출액과 농업법인 매출액 합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개소수의 증가로 전체 농업법인의 매출액 규모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파악됨.

- 2019년 전체 2만3,315개 법인 중 결산을 시행한 법인은 2만2,147개이며, 매출액 5억원 미만인 법인이 62.56%에 달하고 있음. (1억원 미만인 법인이 8,817개소로 39.81%, 1~5억원 미만은 5,039개소로 22.75%임.)

□ 농업법인 출자액 및 출자 구조

○ 현재 농업법인의 출자구조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협, 타 농업법인 등)와 비농업인 및 기타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3년 총출자액이 2조1,362억원이었으며, 2019년에도 총출자액은 2조2,560억원으로 변화가 적었음.

- 영농조합법인 법인당 평균출자액은 2억 2천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농업인 출자비율이 2013년 89.18%에서 2019년에는 95.4%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표 5] 영농조합법인 출자 구조 (2013년~2019년)

연도	영농조합법인		법인당 평균 (백만원)	출자액 (10억원)				비율 (%)			
	출자 법인수 (개소)	출자액 (10억원)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 생자 단체	기타 법인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 생자 단체	기타 법인
2013	9,651	2,136	221.4	1,905	202	20	8	89.18	9.48	0.95	0.39
2014	10,262	2,221	216.5	1,980	206	28	7	89.14	9.29	1.26	0.31
2015	11,792	2,121	179.8	1,910	161	32	18	90.08	7.58	1.49	0.85
2016	11,779	2,588	219.7	2,422	123	20	23	93.59	4.77	0.77	0.88
2017	12,280	2,380	193.8	2,225	107	14	34	93.48	4.50	0.61	1.41
2018	10,163	2,242	220.6	2,097	109	12	24	93.53	4.86	0.53	1.07
2019	10,230	2,260	220.9	2,156	83	15	6	95.40	3.69	0.66	0.25

주 : 통계청의 자료에서 농업인, 비농업인 등 구분된 통계자료는 2013년부터 제공됨.

자료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kosis.kr, 농업법인조사

[표 6] 농업회사법인 출자 구조 (2013년~2019년)

연도	농업회사법인		법인당 평균 (백만원)	출자액 (10억원)				비율 (%)			
	출자 법인수 (개소)	출자액 (10억원)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 생자 단체	기타 법인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 생자 단체	기타 법인
2013	3,682	1,676	455.2	965	458	91	162	57.56	27.35	5.43	9.66
2014	4,781	2,037	426.1	1,204	503	101	229	59.09	24.71	4.98	11.22
2015	5,692	2,307	405.2	1,464	454	79	310	63.48	19.67	3.41	13.44
2016	6,309	2,521	399.5	1,636	445	86	354	64.89	17.65	3.42	14.03
2017	7,920	3,026	382.0	2,160	462	63	341	71.40	15.27	2.08	11.26
2018	11,617	4,055	349.0	2,789	755	64	446	68.78	18.63	1.59	11.01
2019	13,085	4,626	353.5	3,140	963	62	461	67.88	20.81	1.34	9.97

주 : 통계청의 자료에서 농업인, 비농업인 등 구분된 통계자료는 2013년부터 제공됨.

자료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kosis.kr, 농업법인조사

- 농업회사법인은 2013년 총출자액이 1조6,761억원으로 영농조합법인 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총출자액이 4조6,260억원으로 영농조합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증가하였음.
- 2013년에도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당 평균 출자액은 4억6천만원으로 영농조합법인 보다 큰 특징이 있었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비율은 2017년 71.40%까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9년에는 67.88%로 집계되었음.

2.2. 주요국 농업법인 제도 비교⁵⁾

가. 주요국별 비교 유의점과 특징적 요소

□ 주요국 농업법인 제도 비교의 유의점

- 국가별 농업법인 제도의 직접 비교는 각 국가마다 농업 여건과 제도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농업법인을 구성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국가마다 각기 다를 뿐 아니라, 농업인·비농업인 및 법인의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한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임.
- 또한, 국가마다 법인 제도(상법, 민법, 회사법 등)가 상이하어 더욱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타 국가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법인격이 존재하며 이들은 등기, 출자, 의사결정 방식 등이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법인격과 다른 경우가 있어 이해가 어려움.
-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농업법인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5) 주요 국가별 농업법인제도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장민기(2019). “미래농업을 위한 농업법인 제도의 활용: 한국·일본·프랑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농정연구』 69호: 171-200 / 장민기·홍지영·유리나·정성웅. 2019. 『농업법인의 실태분석 및 경영진단·평가 모형 개발』. 농정연구센터·농촌진흥청 / 마상진·안석·김유나(2020),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R9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홍범교·성명재·이동규·서주영(2021),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를 참고할 수 있음.

□ 농업법인의 위상

- 주요 국가에서 농업법인제도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
 - “농업법인”에 대해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법인 체제 속에서 농업활동에 대해 조세상의 우대를 부여하는 방식도 있음.
 - 일본·프랑스의 경우 별도의 농업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들 중 농업생산 및 관련 활동이 있는 법인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농업법인은 구성 주체로서 “농가(농민)”와 활동으로서 “농업생산”, 보유·이용 자원으로서 “농지”의 소유가 가능한 법인체를 의미함.
 - 독일, 프랑스 등 농지의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농지에 대해서는 이용규제가 존재하며,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이용하여 농업생산활동이 가능한 법인으로 특별히 구별하고 있음.
- 주요 국가들에서는 농업 활동은 생산 이외에 농업투입재 제조(퇴비, 작물보호제, 종자·종묘), 농기계의 공동이용과 가공·저장·상품화, 판매·유통 등 농업 생산 전·후방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농업법인은 규모화된 농업생산을 추진하는 이외에 농가를 뛰어넘는 자본투자를 통하여 다각화 영역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구성원 및 출자자

- 주요국의 농업법인 제도를 보면, 전통적인 가족농의 조직적 확장을 중심으로 농업법인 체제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농지 소유, 농업 활동의 주체로서 “농업인”의 참여를 농업법인의 주요한 요건으로 두는 특징이 있음.
- 하지만, 법인화는 규모화외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법인 구성 주체를 농업인 이외에 농관련산업 및 비농업 종사자와 기업 등으로 개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농업법인을 구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이외에 농산물 가공, 판매 등 전·후방 관련 사업체의 참여로 사업의 확장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순수한 자본 투자자를 통해서도 농업법인의 규모화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는 농업인의 참여·주도력과 농업생산활동을 기반으로 농업법인을 구성하고, 일정 요건과 한도를 부여하여 농관련 산업 주체 및 비농업 주체의 출자·참여를 허용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음.
- 농업법인은 일률의 단일 제도와 법인격으로 운용되기 보다는 사업 범위, 주체 구성, 참여 비율 제한 등에 따라 다양한 법인격과 제도 틀 속에서 운용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국 국가별 농업법인 제도 주요 내용

□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농업법인은 농업인(농업생산 활동 종사자)가 주도하는 소규모 법인체라는 특징이 있음.
- 프랑스의 농지 소유는 농업인, 비농업인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소유에 대한 사항보다는 “농업활동”을 중심으로 법인을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농지소유의 제한은 없으나 농지의 농업외 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와 분리된 임차지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음.
- GAEC의 경우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법인을 구성하며 특히, 부자(父子) 및 가족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경영 승계에 활용하고 있음.
 - GAEC 참여자는 개별의 농업경영을 금지하고 모두 법인 영농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법인도 종사자들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EARL은 와인 제조 등 농업 관련 다각화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10인 미만으로 구성하여 중소규모 농업생산 및 다각경영 체제를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제한이 있음.
- GAEC, EARL 모두 법인의 최저 출자액을 제한하면서도 법인 구성 인원을 제한하여 효과적 경영을 도모하고, 청년 세대의 참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농업법인의 인적 구성에 대한 강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프랑스의 농업법인 통계를 보면, 2016년 전체 농업경영체 수 45만5천개소 중 농가는 29만6천호로 65%이며 EARL 7만9천7백개소, GAEC 4만3천개소로 합하여 26.9%를 차지.
 - 반면 농업자원인 농지와 노동력은 EARL, GAEC가 52.0%를 점유하여 농가와 비교하여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표 7] 프랑스 농업경영체 유형별 현황

(단위: 천, %)

구분	1988		2000		2010		2013		2016	
	수	%	수	%	수	%	수	%	수	%
농가	948.7	93.3	538.0	81.0	341.7	69.5	295.9	65.5	296.1	65.0
EARL	1.6	0.2	55.9	8.4	78.6	16.0	84.8	18.8	79.7	17.5
GAEC	37.7	3.7	41.5	6.3	37.2	7.6	38.2	8.5	43.0	9.4
기타	28.8	2.8	28.4	4.3	33.9	6.9	32.7	7.2	36.5	8.0
합계	1,016.8	100.0	663.8	100.0	491.4	100.0	451.6	100.0	455.4	100.0

주 : 프랑스 본토(France métropolitaine)

자료 :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Enquête sur la structure des exploitations agricoles(2016)

[표 8] 2016년 프랑스 농업경영체 유형별 자원, 생산액 점유 현황

구분	개소수		노동력(AWU)		농지(UAA) 천ha		생산액	
	개소	%	천인	%	천ha	%	백만유로	%
농가	296.1	65.0	296.0	40.1	9,979.6	36.7	18,742.3	30.5
EARL	79.7	17.5	124.1	16.8	6,519.0	24.0	12,325.3	20.0
GAEC	43.0	9.4	179.4	24.3	7,828.1	28.8	19,694.6	32.0
기타	36.5	8.0	138.6	18.8	2,880.7	10.6	10,754.2	17.5
합계	455.4	100.0	738.2	100.0	27,207.3	100.0	61,516.3	100.0

주 : AWU = Annual Work Unit 농장의 연중 전일종사 인력 1인 해당치 / UAA = Utilized Agricultural Area 경작지, 영구초지, 과수원, 텃밭 등을 포함하는 농장 농지

자료 : 같은 자료.

□ 독일

○ 독일은 별도의 농업법인 제도가 없었으나, 2008~2009년 조세 관련 법규를 개정하면서 농업경영 및 농업관련 사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면서 농업법인의 특성이 확보되었음.

- 독일 농업 조직경영체는 인적 회사, 사법상 법인으로 크게 구분됨. 인적 회사의 경우 법인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 없이 사원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어 과세되며 영업세, 부가가치세 면세(사후 정산), 근로소득세 저세율 적용 등 혜택이 있음.
- 사법상 법인에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나, 구 동독지역의 협동농장 체제가 협동조합(등록협동조합 “eG”)으로 계승되면서 생산협동조합 범주를 별도로 형성했고, 최근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경영이 증가하였음.

[표 9] 독일 농업경영체 구성

구분	1999		2005		2010		2016	
	수	%	수	%	수	%	수	%
농가	450.4	95.4	371.4	93.9	273.0	91.3	244.2	88.7
인적회사	16.1	3.4	18.8	4.8	21.0	7.0	25.7	9.3
사법상법인	4.5	1.0	4.6	1.2	4.6	1.5	5.1	1.8
공법상법인	0.9	0.2	0.7	0.2	0.4	0.1	0.4	0.1
전체	472.0	100.0	395.5	100.0	299.1	100.0	275.4	100.0

원자료 : BMVEL, Agrarpolitischer Bericht

자료 : 마상진외(2020),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R9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표를 축약.

[표 10] 독일 농업경영별 경지 규모

구분	1999		2005		2010		2016	
	비율 %	평균면적 ha						
농가	69.9	26.6	68.9	31.6	66.4	41	64.1	44
인적회사	12.0	127.7	13.5	122.6	15.9	127	18.6	120
사법상법인	17.8	676.9	17.3	647.5	17.4	631	17.1	560
공법상법인	0.3	64.8	0.3	76.6	0.3	99	0.2	97
전체	100.0	36.3	100.0	43.1	100.0	56	100.0	60

원자료 : BMVEL, Agrarpolitischer Bericht

자료 : 마상진외(2020),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R9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표를 축약.

□ 일본

○ 일본의 경우 농사조합법인은 농업인들이 구성하는 생산법인으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며, 넓은 의미의 농업법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유적격법인” 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2016년 농지법 개정으로 기존 “농업생산법인” 명칭을 “농지소유적격법인” 으로 바꾸고, 구성원·의결권 요건을 완화하였음.
- 농업관계자(상시종사자, 농지를 제공하는 개인,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의결권이 1/2 이상(기존 3/4 초과)이어야 하고, 임원은 절반 이상이 농업 관련 상시종사자이며, 주요 사용자 중 1인 이상(기존 1/2 이상)이 농작업에 종사해야 함.
- 또한, 주된 사업으로서 농업생산 및 농업 관련 사업이 최근 3개년간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농지소유적격법인이 될 수 있음.

- 통계자료를 보면 농지를 보유하여 농업생산활동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농사조합법인 이외에 주식회사 등 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오히려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원예(식물공장), 축산업 등을 하는 회사들도 존재함.
- 일본의 농업법인제도는 농사조합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두면서도, 농사조합법인과 일반 법인 중 일정 요건을 부여하여 농지소유자격 법인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일본의 농지소유자격법인 제도는 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반 기업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는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의 흐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표 11] 일본 농업경영체 수 (2015, 2020)

(단위 : 천개소)

구분		2010	2015	2020
합계		1,679.1	1,377.3	1,075.7
개인		1,643.5	1,334.0	1,037.3
조직경영체	합계	31.0	37.3	38.4
법인조직	법인소계	17.1	27.1	31.6
	농사조합법인	3.6	6.2	7.3
	회사	8.9	16.6	20.0
	각종단체	4.1	3.4	2.1
	기타법인	0.5	0.9	1.3
	지방공공단체	0.3	0.2	0.1
비법인조직		13.6	10.0	7.5

자료 : 農林水産省, 農林業センサス (농림업총조사), 각년도

[표 12] 농지소유자격법인 개소수 및 2020년 경영면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농사 조합법인	특례 유한회사	유한합명 합자회사	주식회사	합계	농지소유자격법인 품목별 개소수(2020년)
2010	3,056	170	6,907	1,696	11,829	
2015	4,111	323	6,427	4,245	15,106	
2016	4,555	390	6,410	4,851	16,206	
2017	4,961	451	6,283	5,445	17,140	
2018	5,249	504	6,289	6,194	18,236	
2019	5,489	585	6,277	6,862	19,213	
2020	5,571	625	6,021	7,333	19,550	

자료 : 農林水産省経営局, 조사자료 (매년 1월1일 기준)

[표 13]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의 농업법인 제도 주요 내용

국가	법인격	주요 내용
일본	농사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법]에 의한 법인, 농민3명 이상, 1인 1표 • 1호법인 :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이용 • 2호법인 : 농업경영을 행하는 법인
	농지소유적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에 의해 농지 소유가 가능한 법인 • 농사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주식회사의 경우 양도 제한 회사로 한정) • 농업관계자가 의결권의 1/2 이상, 법인 임원·책임권자 중 1인 이상이 농업 종사해야 함. • 법인의 농지권리 취득 요건으로 홋카이도 2ha, 이외 50a 하한면적이 있으며, 채소·화훼·가수 등 집약경영의 경우 하한면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프랑스	GAEC (공동농업경영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본법] la loi d'orientation agricole [농어촌법]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 최소1,500유로, 2~10인미만 • 참여자 전원 법인 영농종사자 (개별 영농이 허용되지 않음.) • 투명성원칙으로 참여농업인은 개별농가와 동일한 권리 부여 (직불금 등)
	EARL (유한책임농업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법]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 최소 7,500유로, 1~10인 미만 • 최소1인 이상 영농종사자여야 하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자가 50% 미만이어야 함. • 법인이 단일 경영체로서 직불금 수혜 대상이 됨. 참여자 개인에 대한 수급권은 없으나 청년(40세 미만)인 경우 예외로 동등하게 수혜 대상 인정

국가	법인격	주요 내용
	SCEA (농업경영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2인 이상. 자본에 대한 제한 없으며, 비농업인 및 법인 출자가 자유로움. • 농업생산 참여 등 별도의 제한 없음. • 법인이 단일 경영체로서 직불금 수혜 대상이 됨. 참여자 개인에 대한 수급권을 없으나 청년(40세 미만)인 경우 예외로 동등하게 수혜 대상 인정
독일	(별도의 농업법인격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회사 Personengesellschaften : 민법상의 조합(GbR), 합명회사(OHG), 합자회사(KG) • 사법상의 법인 Juristische Personen : 등록협동조합(eG), 유한회사(GmbH), 주식회사(AG) • 농업생산활동이 경영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구분 : 조세법상 농림업경영체 인증을 받은 경영체에게 조세 혜택을 부여
한국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인 이상의 농업인·생산자단체로 구성하며, 농지 소유 가능.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공동출하·유통·가공·수출, 농작업대행, 관광휴양사업, 기타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도 80억원 이내인 경우 9/10, 80억원 초과인 경우 8억원 제외한 금액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음. • 업무집행권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인 경우 농지소유 가능 • 농업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부대사업

자료 : 장민기·홍지영·유리나·정성웅. 2019. 『농업법인의 실태분석 및 경영진단·평가 모형 개발』. 농정연구센터·농촌진흥청 / 마상진·안석·김유나(2020),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R9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용을 발췌하여 다시 정리하였음.

2.3.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화

가. 농업법인 제도 변화 총괄

□ 농업법인 제도의 창설

- 농업법인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정책적으로 “영농단”, “단지”, “작목반” 등 농업인 공동사업조직을 지원하여왔음.
 - 논 농업과 관련해서는 1981년부터 5호 단위(소규모) 및 10호 단위(대규모) “기계화영농단”을 지원하였으며 1990년 위탁영농회사 제도 도입 이전에 4만여 개소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⁶⁾
 - 또한,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특산품(민속공예, 농수산물, 섬유·직물 등)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특산단지”를 조성하여왔으며, 1993년까지 누적 614개소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됨.⁷⁾
 - 작목반은 1980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원예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하여, 농협 내부의 기초조직으로 구성하여 확대되었음.
-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음.
 - 기존 조직경영체들이 농가 간 결합, 협업체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시설을 운영하는 개별 농가가 주도하며 체계적이지 않았음.
 - 농업법인 제도는 비정규적인 농민조직을 법인화를 통하여 농업경영체제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됨.
- 창설 당시의 법 조항에서는 농업법인의 목표를 ① 농업경영의 합리화 ② 농업생산성 향상과 함께 ③ 농가소득의 증대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위탁영농회사”는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경영체로서 논·쌀 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대형농기계를 활용한 대규모 위탁경영 체제를 구상하는 것이었음.

6) 농림축산식품부(2015), 농업·농촌 7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p226-227

7) 농림수산부(1994.9.),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 세부실천계획, p51

□ 농업법인의 위상 강화와 확대

- 농업법인 제도가 창설된 이후,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초기부터 농업법인 활성화·확산을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농업법인 체제의 큰 분수령은 1993년 UR 타결과 1994년 이후 전개된 “신농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김영삼 정부 기간에 추진된 신농정에서는 개방화 속에서도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42조원의 대규모 투융자를 시행하였음.
 - 특히, 농업생산 이외에도 유통, 가공 등 농업 전·후방의 인프라 지원을 농협·농업법인에 집중하여 추진하였음.
 - 정책 수혜를 위한 농업법인이 다수 창설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농업법인의 확산과 규모화된 법인 경영체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표 14]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 : 농업회사 법인제도 도입 주요 내용

<p><정책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의 이점을 살린 법인 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기업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이러한 경영기법을 인근의 전업 농어가에 확산▪ 이 경우 농민의 주도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되, 비농민의 출자를 제한적으로 허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과 시설·장비 및 운영자금을 종합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공제기금·자조금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 수준의 육성·지원 제도를 완비 <p><농업회사 법인제도의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형태의 농업법인 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규모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적 경영기법을 주변농가에 전파시켜 전업농의 경영혁신 유도▪ 대규모 생산과 동시에 농수산물의 저장, 유통, 판매, 가공 등을 복합 경영토록 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상법 규정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원칙적으로 농민,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농민의 자본출자를 허용하되, 그 한도를 총출자액의 49% 이내로 하고 법인경영권에 대한 참여를 제한▪ 주식회사를 제외한 합명·합자·유한회사는 농지소유를 허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사법인이 투기적 동기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보유 년수를 규정▪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생산활동을 주로 하되, 농작업의 수탁, 농산물 판매, 저장, 유통, 가공 등 농업 관련 제반 사업을 경영
--

<영농조합법인의 활성화>

-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시 협업 영농과 농수산물 유통·가공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제도를 마련
 - 조합원 자격 조건 상 동일 시·군 거주 등 지역 제한과 3년 이상 영농종사 경험자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
 - 영농조합원 조합원 및 출자주의 범위를 생산자단체와 비농업인까지 확대, 다만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으로 하고 의결권을 제한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 품목별 전문농업경영체로 육성
- 품목별로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시 영농조합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관련사업을 종합지원

자료 : 농림수산부(1994. 9.),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 세부실천계획, pp54-58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정과 농업법인 제도 변화

- 농업구조 정책을 대표하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1999년 농업·농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농정의 방향이 변화하였음.
 - 기본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속해 있었으며, 농업을 식량 안전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간산업으로 규정하였음.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있던 농업법인 제도를 기본법이 계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준조합원 출자 한도 폐지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 (1/3 → 1/2) 조치가 있었음.
- 2009년 기존 기본법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면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책임한도 축소,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 제한 완화가 이루어졌음.
 - 당시 정부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군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대표조직 등으로 농업생산의 획기적 확대와 유통과 수급관리를 일원화하는 농산업 시스템을 구상하였음.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90%까지 확대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에서 농업인 대표자 항목을 삭제하고 업무 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을 1/2에서 1/3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음.

8) 농림축산식품부(1999.2.8.), ‘농업·농촌 기본법’제정 - 환경보전기능 살리고 식량공급 빈틈 없앤다, 보도자료

[표 15] 농업법인 제도 변화 : 연대기

연도 [제·개정]	법제	주요 내용
199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법인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향상, 농가소득 증대 - 위탁영농회사 : 농민의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
199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영농조합법인] - 사업범위 확대 : 공동출하, 가공, 수출 - 조합원 자격, 출자비중 확대 : 자격으로 “소규모” 경영농민 폐지 -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농협 등)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 허용 [위탁영농회사] - 설립주체 다양화 : 농민, 생산자단체, 농지개량조합 - 농가당 위탁규모 3만제곱미터 제한 폐지
199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당해 시·군 거주 및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요건 폐지 - 비농업인의 준조합원 가입 허용 [위탁영농회사 > 농업회사법인] - “위탁영농회사” 명칭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 (시행규칙)1994년 위탁영농회사 설립자격 동일 시·군·구 거주 농민으로 함. (3년 종사 요건 폐지), 1995년 자격요건 폐지. - 사업범위 : 생산성향상, 농산물유통·가공·판매, 농작업의 전부·일부대행
	농지법 (1996년 시행)	농지법 제정,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농지법상의 농업법인으로 규정,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자격 부여 - 농업회사법인 : 합명·합자·유한회사, 농업인출자 1/2 초과, 대표자 농업인, 업무집행권 사원의 1/2 이상 농업인 요건
1995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농업회사법인] (법, 1996.1.1. 시행)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설 - 농지소득 법인세 면제, 농지소득 이외의

연도 [제·개정]	법제	주요 내용
		경우 5개년간 법인세 50% 감면, - 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발생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령) - 영농조합법인 농지소득외 배당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조합원 당 500만원 → 1,200만원 상향
1999	농업·농촌기본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법인 관련 법조문 단순화 - 농업법인 설립 통지제도 폐지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준조합원 출자한도 폐지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 (기존 1/3 → 1/2)
2002	농지법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인정
2003	농업·농촌기본법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 해산 청구권자를 농림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2004	농업·농촌기본법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민법의 조합 규정 준용 규정을 삭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 (기존 1/2 → 3/4)
2005	농지법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 완화 - 총출자액 한도 삭제
2006	조세특례제한법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신설 - 농업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농업소득회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20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법에서 농업경영체 관련 조항 독립 - 제16조 영농조합법인 ~ 제19조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조직 변경 허용(합명회사, 합자회사만 허용)

연도 [제·개정]	법제	주요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 -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 100분의 90까지 확대
	농지법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 완화 - 대표자 농업인 요건 삭제 - 업무집행권 가진자 비중을 1/2 → 1/3 이상으로 완화
20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 -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허용,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20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지자체에 설립사실 통지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영농조합법인] - (법) 영농조합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을 과세로 전환, (령) 과세 면제 한도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015.1.1.시행)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추가
20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범위에 유통,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 -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기·변경 사실 통지 - 등기 관련 상업등기법, 이외 민법 중 조합 규정 준용 규정 - 지자체의 농업법인 관리감독 기능 강화 -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해산명령 조항 신설 - 과태료 : 설립·변경 등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연도 [제·개정]	법제	주요 내용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유한책임으로 전환 -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허용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 합병·분할 규정 신설
20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 변경시 “유한책임회사” 허용 [상법에 유한책임회사 제도 도입에 따른 조치]
202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설립시, 중요사항의 변경, 해산에 대해 주사무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확인증 발급 및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 의무. - 설립등기 조항 신설 - 사업범위 조항 독립, 부동산업의 금지 조항 신설 - 실태조사 강화 (지자체 비용지원, 국세청 등 정보관리기관 자료 요청 등)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농지처분 조치 - 과징금 부과, 농업법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농지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해산명령 청구 요건 해당시 농지 추가 취득 제한 - 농업법인의 농지 및 전용한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 금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은 농지 즉시 처분 명령 (처분의무기간 없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위시 토지·시설 분양 불허 (임대는 가능)

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업 > 농림어업 > 농업 등 법규의 규정 범위에 따라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1993~2015년까지 사업의 내용은 변경이 없음.

주. 조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계속 개정되어 왔으며, 본 표에는 주요한 내용만을 정리하였음.

□ 농어업경영체법 제정 이후의 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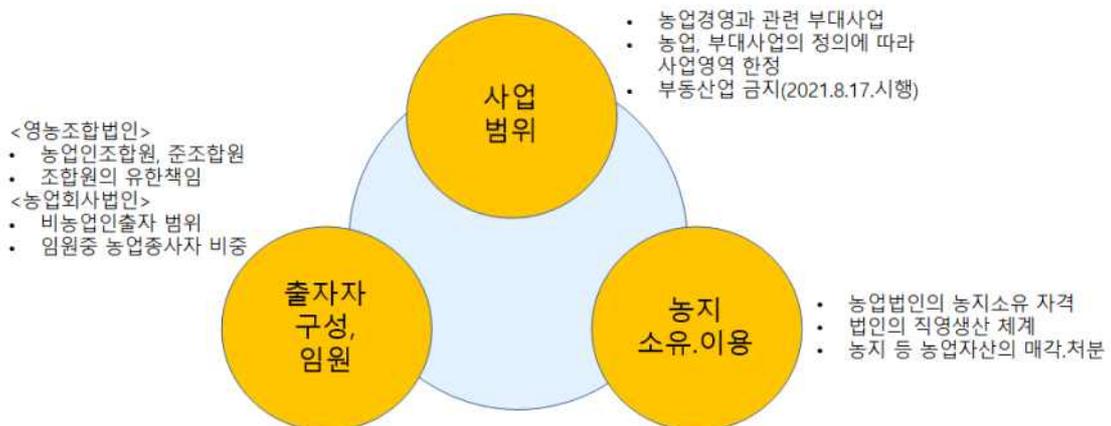
- 2009년 농어업경영체법 제정 이후에는 농업법인 제도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기존 제도를 다듬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전개되었음.
- 2012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를 추가로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고, 2015년에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을 “유한책임”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있었음.
- 이외에 농업법인 실태조사 도입, 조세 특례 사항 정밀화, 설립등기 조항 신설 등 농업법인의 관리 및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음.

나. 농업법인 3대 요소별 제도 변화

□ 농업법인 3대 요소

- 일반 민법·상법상의 법인과 구별되는 농업법인의 특징은 다음의 3대 요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임.
 - 1) 농업인으로 구성 혹은 농업인을 포함해야 하는 출자자
 - 2) 농업경영과 관련 부대사업으로 한정된 사업 영역
 - 3) 농지의 소유·이용

[그림 4] 농업법인 3대 요소



○ 사업범위, 출자자구성, 농지소유 요건은 제도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3대 요소를 갖추어야 농업법인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발현(發現)할 수 있음.

- 다만, 농지 소유·이용의 경우 법인 사업에 따라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농업생산 활동 없이 유통·가공·농촌관광 및 휴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농업법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음. (2014. 8.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 영농조합법인 : 사업, 조합원·출자자 조건의 변화

○ 영농조합법인의 구체 사업은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으며, 1990년 제정 당시에는 농업생산활동으로 한정하였으나 1993년부터 출하, 가공으로 확대하였으며, 2015년 농촌관광휴양사업을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외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업” → “농림어업” → “농업” 등으로 규정하는 범위가 바뀌면서 해당 조항의 문구가 개정되었음.

○ 영농조합법인 제도 초기에는 출자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음.

- 조합원을 농업인만으로 구성하고, 출자는 현물출자, 1인이 지분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출자자는 법인소재지 동일 시·군 거주와 3년 이상 자경(自耕)을 규정하였음.
- 이러한 출자자 요건은 당초 영농조합법인을 근린(近隣) 농업인들이 균형된 의사 결정력을 갖추고 활동하는 협업적 경영체로 설정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

○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농조합법인 출자자의 동일 시군 거주 및 3년 자경 조건은 폐지되었으며, 현물출자 원칙도 폐지되었음.

○ 특히, 2015년에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지위가 무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변경되어, 참여·출자 조합원의 책임 범위가 변화되었음.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무한책임인 상황에서는 자금 대출을 위해 조합 임원·조합원 전원의 동의와 보증이 있어야 하는 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뿐 아니라, 조합원·준조합원 모집·확대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조치였음.

[표 16]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법조항 연혁)

법규	내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1990 (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농작업의 대행 4.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99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농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99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림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015 <현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관광휴양사업 6.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표 17]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 제한 (법 조항 연혁)

법규	내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1990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지·기타의 현물로만 출자 가능. 단, 필요한 경우 농지출자 조합원에 한하여 현금 출자 허용. - 1인의 출자액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출자 전면허용)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지·현금 또는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음.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지·현금 또는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음.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준조합원 출자액의 합계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1994년 비농업인의 준조합원 가입 허용에 따른 보완조치)
1999	(출자한도 폐지)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음.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2000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현행>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 : 사업, 출자자, 농지소유 조건의 변화

- 농업회사법인(위탁영농회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였음.
 - 위탁경영, 농작업대행, 농기계 임대·수리, 관개시설 수탁·관리 등 영농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개편하였고, 이에 따라 법에 명시된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이외에 시행령에 “부대사업”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 부대사업의 내용은 자재, 종묘·종균, 매취·비축, 농기계 및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로서 변화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규정되어 있음.
- 농업회사법인 제도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비농업인 출자 및 농지소유 요건의 완화임.
- 당초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자는 소재지 동일 시·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한정되었으나, 이후 생산자단체로 확대. 현재도 원칙으로서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함.
 - 비농업인 출자는 1995년 1/2 (주식회사 1/3) 이하 → 1999년 주식회사 단서 폐지 → 2004년 3/4 이하 → 2009년 90/100 이하 등으로 완화.
 - 현재는 80억원 이하인 경우 90/100 이하, 80억원 초과하는 경우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로 하고 있어 더욱 완화된 상황임.
-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제정 농지법이 1996년 시행되면서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회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이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농지소유가 가능해지고, 농업인출자 비율·대표자 요건이 폐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음.
- 현재는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율이 1/3 이상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표 18]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부대 사업 (법조항 연혁)

법규	내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사업)	
1990 (제정)	1.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또는 농작업 대행 2. 농기계 및 장비의 임대와 수리 3.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4. 기타 농가의 영농비용절감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995	(삭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대사업)	
1995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3.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부대사업)	
2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현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표 19]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 출자자, 출자제한 (법 조항 연혁)

법규	내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990 (제정)	- (설립자) 위탁영농회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1994	- (설립자) 위탁영농회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농민과 동 지역을 관할하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생산자단체.
1995	- (설립자) 삭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자)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의 출자액 합계는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2 (주식회사의 경우 1/3)을 초과할 수 없음. [1994년 비농업인 출자 허용에 따른 세부조치]
1999	-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의 출자액 합계는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2 을 초과할 수 없음. [주식회사 단서 조항 폐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2000	비농업인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2004	비농업인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음.
2009	(삭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2012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90 -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특례

□ 농업법인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과 출자자에게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있음.
 - 농업법인 : (국세)법인세 (지방세)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 출자자 : (국세) 법인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 농업법인 및 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영농조합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농업회사법인 - 동법 제68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
 - 조세 감면 세부 사항은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 각 조항별로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음.
- 2010년대까지는 조세 감면 사항을 확대·확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여 왔으나, 그 이후에는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4.1.1.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로 전환되었으며, 2016.12.20. 농업인이 법인에 출자하는 토지가 주거지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농업회사법인은 2006.12.30.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이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등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음.

[표 20]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내용 (현행)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	
국세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기타 소득의 일정 한도 면세 [조합원 1인당 6억원]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의 전액 및 기타 소득의 일정한도 [50억원 이내, 별도산식]까지 면세, 이외 축산업 및 임업 소득을 포함한 이외의 소득은 5년간 50% 감면	
	양도 소득세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배당 소득세	식량작물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배당소득 1인당 1,200만원 한도 면세	출자자의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을 면세, 그 외의 배당소득은 중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6조 (농업법인 공통)			
	부가 가치세	[영세율] 농업법인에게 공급하는 1. 비료 2. 농약 3. 농기계 4. 축산용기자재 5. 사료 6. 유기농어업자재 [환급] 농업법인에게 공급하는 62종 농·임업용 기자재 [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		
지방세	취득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 시설에 대해 100분의 75를 감면.	2023.12.31.시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2023.12.31.시한	
	재산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2023.12.31.시한 직접이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 취득세 추징.	

주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12.31.로 일몰되었음.
 자료 : 홍범교·성명재·이동규·서주영(2021),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
 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한국조세재정연구
 원, p46의 표를 현행 법규를 확인하여 연구진이 재정리
 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2.2.18. 시행) 제11조의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

- 2011년 이후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명기⁹⁾하고 현물출자 관련 감면 사항들을 구체화하였음.
-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에도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으나 계속 연장하면서 감면이 시행되고 있음.
 - 법인의 농지 취득, 농업 생산·유통·가공 등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취득세는 1회의 감면으로 그치지만, 재산세의 경우 농업적 활용이 지속되고 일몰이 연장되면 경우 계속 감면의 효과가 발생하는 유리성이 있음.

□ 농업법인 조세 특례의 요건 : 농업법인 제도의 또다른 축

- 조세 특례는 일반 법인과 차별화되는 농업법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농림사업 수혜 대상이 되고,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 이외에 법인세, 소득세에서 면제·감면이 되기 때문에 농업법인 제도가 강점이 되고 있음.
- 독특한 점은 통상의 농업법인 구성 요건 보다 더욱 정밀하고 명시된 영역에 대해서만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대표적으로는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는 작물재배업 중에서도 세분류인 “식량작물재배업” 만 해당하고 있음.
 -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현물 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한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경작한 자” 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기존 농업법인의 경영체등록이 정부 지원사업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1.1.부터는 조세 감면의 요건으로도 추가 되었음.
 - 농업법인의 법인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함.
 - 출자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출자자의 배당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도 개인의 관련 서류와 함께 출자한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농업법인의 입장에서는 3년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갱신하는 등 강화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9) 내용은 농업소득 등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는 것임.

라. [보론]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중소기업과의 조세특례 비교

□ 어업법인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과 농업법인과 비교

- 법인 설립단계에서는 지방세,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익금 배분단계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부여되어 있음
 -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반면, 어업회사법인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만 있음.
-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조세특례 주요 내용 비교 결과,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및 재산세는 유사하지만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에 있어서 농업법인이 어업법인보다 다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표 21] 어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내용 (현행)

구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국세	법인세	어로어업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소득분 감면, 어로어업소득 외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양도소득세	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배당소득세	배당소득 연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부가가치세	어업용 기자재(사료 및 어업용 기자재 42종)는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어업용 기자재 33종)는 사후 환급,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은 면제, 어업용 석유류는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06조)	
지방세	취득세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의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재산세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자료 : 김경환 외(2021), 어업법인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지역농업네트워크영남협동조합의 표를 재정리

- 법인세 관련 농업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전액 면세이고, 그 외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1인당 6억원, 농업회사법인은 50억원 이내에서 면세인 반면,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만 조합원 1인당 3천만 이하 소득분과 그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 1인당 1.2천만원 이하 금액만 감면 혜택이 있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관련 감면 혜택이 없음.

[표 22]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내용 비교

구분	농업법인		어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어로어업소득은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이하 소득분 감면, 그 외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천만원 이하 금액 감면	-
	기타소득 (조합원 1인당 6억원) 면세	기타소득 (50억원 이내) 면세		
양도소득세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어업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배당소득세	식량작물업에서 발생한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 전액		배당소득 연 1.2천만원 이하의 금액 면제	-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한 조합원 배당소득은 1인당 1.2천만원 한도 면세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비료, 농약, 농기계 등 환급) 62종 농임업용 기자재 면제) 농업경영·농작업 대행 용역		영세율) 사료 및 어업용 기자재 42종 환급) 33종 어업용 기자재 면제)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취득세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 4년 이내) 영농용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시설에 대해 75% 감면 영농·유통·가공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50% 감면		영어·유통·가공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50% 감면	
재산세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영어·유통·가공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 배당소득세는 농업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 전액이 면세이고,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1.2천만원 이내 및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이 있음.

- 반면,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1.2천만원 이내 금액만 면제이며, 어업회사법인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음.
- 그 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조세특례 내용이 유사함.

□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고용·투자·연구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짐.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경영안정 지원, 투자 촉진 지원, 연구·인력개발 지원,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지방이전 지원, 고용촉진 지원, 기업상속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조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2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행)

구분	세부 조세지원제도
<p>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및 감면, 창투자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투자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창투자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투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배당소득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창업자금 사전상속) -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지방세 과세특례,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p>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접대비의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구분	세부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전화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감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기업상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기업의 승계에(중소기업 주식사전상속)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조세특례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중복지원의 배제, 수도권과일억제한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자료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2022, 중소벤처기업부) 내용을 재정리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은 정책 목표별로 특화하여 관련 법에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과 같이 법인, 출자자에 대한 일률적 조세 감면 방식이 아니라 정책 목적의 특정 “행위”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연구개발특구·지식산업센터 등 특화지구 및 산업단지·지구로의 집적과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 개념의 조세 특례 사항도 적극 활용하는 특징이 있음.

2.4. 소결

□ 농업법인 제도의 최근 경향 : 완화에서 규제로

- 2020년 이후 농업법인 제도는 규제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음.
 - 2021년 하반기에 농지법과 농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규제적 조치들의 법제화가 완료되었음.
 - 조치에 따라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기존 완화적인 농업법인, 농지 제도의 기초가 강력한 규제적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됨.
-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폐지되었던 법인 설립 지자체 통보에서 나아가 설립·변경 사전에 지자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음.
- 이외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서 “부동산업 금지”를 명시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따른 조치 강화, 정보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농업법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음.
- 경제주체들의 농업법인, 농지를 둔 전략적 행동과 오용(誤用)의 문제는 방어해야 하는 것이며, 최근의 농업법인 제도의 목적과 일선 현장의 요구를 규율하는 균형된 시야가 필요한 시점임.

□ 농업법인 체제의 재정립을 위한 점검

- 농업법인 제도는 농가 중심의 농업 생산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 전환의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농업의 지속가능성에서 전제가 되는 가족농 체제의 발전을 지향하면서도 법인화를 통한 규모·효율의 농업경영체제를 보완적으로 확보 해야 함.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가족농이 중심이 되면서도 농지·인력 등 농업자원의 일정 부분을 조직경영체가 담당·점유.
 - 농업인들이 주도하는 조직적 농업경영체제, 미래 세대로의 계승이 가능한 체계적 경영체제를 확보해 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업법인은 농업 생산과 함께 전·후방 관련 부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통·가공·마케팅과 농촌관광·휴양 등 부가가치화 측면에서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로서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음.
 - 반면, 세대 단절과 소규모 분산적 농업 생산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농업경영체제를 재확립하고, 농업생산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이 가능한 농업법인 제도의 점검이 필요함.

□ 제도, 현장을 아우르는 농업법인 체제의 발전

- 1990년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농업경영의 규모화·전문화를 이끌어온 농업법인제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함.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법,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복합적인 제도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에 농림사업 지원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제도 망(罔)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음.
- 농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강건한 농업경영체의 확보와 이를 통한 농업생산력의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법인 체제에 요구되는 역할은 농가간의 결합을 통한 농업자원의 효과적 이용,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처할 농업서비스 체제의 확립 등이 있음.
-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농촌을 주도할 건강한·건전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법인의 역할을 다시 확립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상황으로 생각됨.
 - 농업법인제도가 현장의 농업 주체들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다시 농업주체들이 농업법인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만들어 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야 함.

3. 농업법인 현황 : 통계자료분석

3. 농업법인 현황 : 통계자료 분석

3.1. 방향

가. 기본 아이디어

- 2001년 이후 누적된 농업법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시간적 변화상을 정량적으로 이해함.
-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통계 자료를 결합하여 최대한의 장기 시계열과 수치 항목을 파악하는 아이디어로 접근하였음.
 - 농업법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확립하여, 농업법인의 변화상을 통계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제도변화가 농업법인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하였음.
- 주요한 농업법인 제도 변화 시기를 전후하여 농업법인의 성과, 출자자 구성의 변화를 계량·검증하였음.
 - 농업법인 제도변화의 영향은 이중차분(DID) 분석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시도하였으며, 제도의 수혜를 받은 농업법인 집단과 비수혜 농업법인 집단 간의 결과(종속) 변수가 상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 이외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각각 매출액 상위 10위 사업체의 변화를 누적적으로 파악하는 등 통계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음.

나. 통계자료 검토 및 정리

- 농업법인 통계 자료 : 농업법인조사, 농업법인실태조사
- 농업법인 통계 자료 산출은 농업법인조사(농식품부·농정원, 1년 주기), 농업법인실태조사(지자체,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음.
 - 전국의 모든 활동 법인을 조사하는 전수 조사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목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차이가 있음.

- 원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농업법인 조사는 “농업법인” 단위로 항목이 설정되어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 및 “출자자” 단위로 항목이 설정되어 2016년과 2019년에 조사되었음.
- 농업법인 조사는 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1. 조합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 유무를 조사함.
- 참고로 2018년, 2019년 농업법인조사는 통계청의 통계품질점검 결과에 따라 모집단이 바뀌었고, 이로 인한 시계열의 단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 농업법인 분석 자료

- 본 연구는 농업법인 제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농업법인에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있으므로, 최대한 공통의 항목을 바탕으로 연장된 시계열 자료를 정선(精選)하여 분석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① 2001년~2014년 통계청 자료 ② 2015~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정선하여 활용하였음.
 - KOSIS에 공개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이 발간하는 농업법인 조사보고서의 수치를 확인하였음.
 - 다만, 분석에 필요한 원데이터는 조사된 농업법인의 실측치로서 농업법인 조사보고서의 모수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음.
- KOSIS에는 2015~2017년은 집계법인수, 2018~2019년은 모수의 법인수로 표출되어 있음.
- 2001~2014년 통계청 조사 및 2015~2017년 농식품부 조사 자료는 조사된 전체 법인 모수로 하면서 “참여자 개별운영” (농업법인은 존재하나, 참여자가 각자 개인의 농업경영 활동만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법인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하고 있음.
- 2018~2019년 농식품부 조사에서는 모집단을 재편하면서, 전체 모수를 먼저 책정하고, 조사된 법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수치를 환원·산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 한편, 농업법인 매출액은 집계법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외에 자산·영업이익·순이익 등 주요한 경영실적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결산법인의 자료를 별도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산출함.

- 참고로 집계법인의 매출액은 조사된 원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SBR) 자료를 활용하여 보정을 거친 수치임.

[표 24] 2015년~2019년 농업법인조사 실측데이터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모수	집계법인 수/ 조사완료법인수	국세청 자료 연계
2015	18,757	17,484	13,858
2016	19,413	18,088	14,361
2017	21,659	20,200	15,954
2018	21,780	16,771	20,689
2019	23,315	19,026	22,147

주 : 음영은 농업법인조사보고서의 집계법인수, 굵은 네모 안은 실측데이터의 법인수 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각년도),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 농식품부·농정원의 농업법인 조사 보고서에 표시된 모수 및 집계법인 수 [2018년 ~ 2019년의 경우 모수가 집계법인 수로 표시되어 있음.], 조사완료 법인수 수치가 모두 원 데이터와 일치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

다. 분석을 위한 자료 정리

□ 자료 정리

- 본 연구에서는 원 데이터로 각 법인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집계법인, 조사완료 법인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음.
 - 2017년 이전의 자료들은 집계법인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산출되어 있으며, 2018~2019년의 경우에는 가중치로 환산되지 않은 조사 실측치가 해당함.
 - 항목 : 1. 사업체고유번호 2. 지역 3. 사업체명 4. 대표자명 5. 조직형태 6. 종사자수 7. 법인 소유 농지 면적 8. 법인 임차 농지 면적 9. 설립연도 10. 출자자수 11. 출자액 12. 현물출자액 13. 사업부문별 매출액 14. 법인등록번호
- 각 연도별 시계열 자료로 정리하되 공식적인 발표 합계치가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함.

- 모수로 환원하지 않은 집계법인의 수치만으로 매출액, 출자액 등 중요 지표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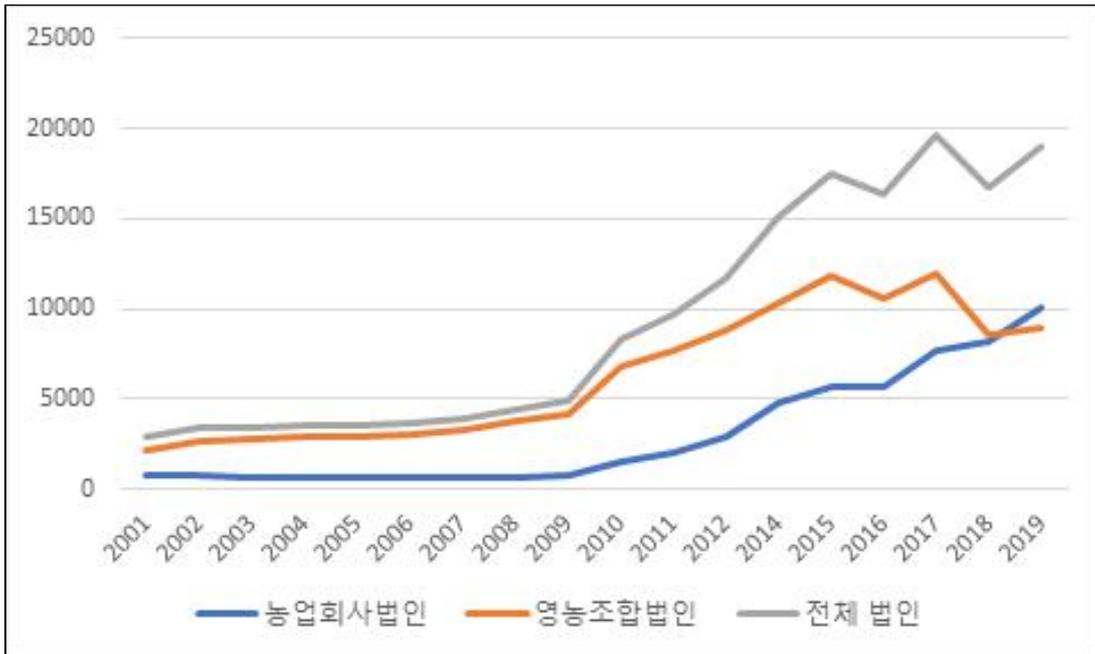
- 2013년 원자료의 경우 관측치가 3,588개로 파악되어 KOSIS에 공개된 수치와 차이가 있음.
 - 2013년 자료는 그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는 보간(Interpolation) 작업을 진행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 또한, 평균산출 및 DID 분석 등 수치 분석에서는 2013년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하였음.
- 본 자료에서 표시한 시계열 집계 자료, 그래프 등은 보간 작업과 이상치(Outliers)를 제거한 결과로 변동성을 완화하여 표시하였음.

3.2. 농업법인의 변화

가. 농업법인 개소수, 매출액, 종사인원 변화

- (개소수) 집계 ·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농업법인 개소수의 변화를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빠른 증가를 확인할 수 있음.
 - 농업법인조사 내 농업법인 개소수는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KOSIS · 농업법인조사 보고서에서 표출하고 있는 경향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매출액) 집계 · 관측된 농업법인 평균 매출액은 농업법인이 영농조합에 비교하여 2배 가까운 규모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특징적인 점은 2010년 이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공통으로 평균매출액은 정체상태이며, 변동성도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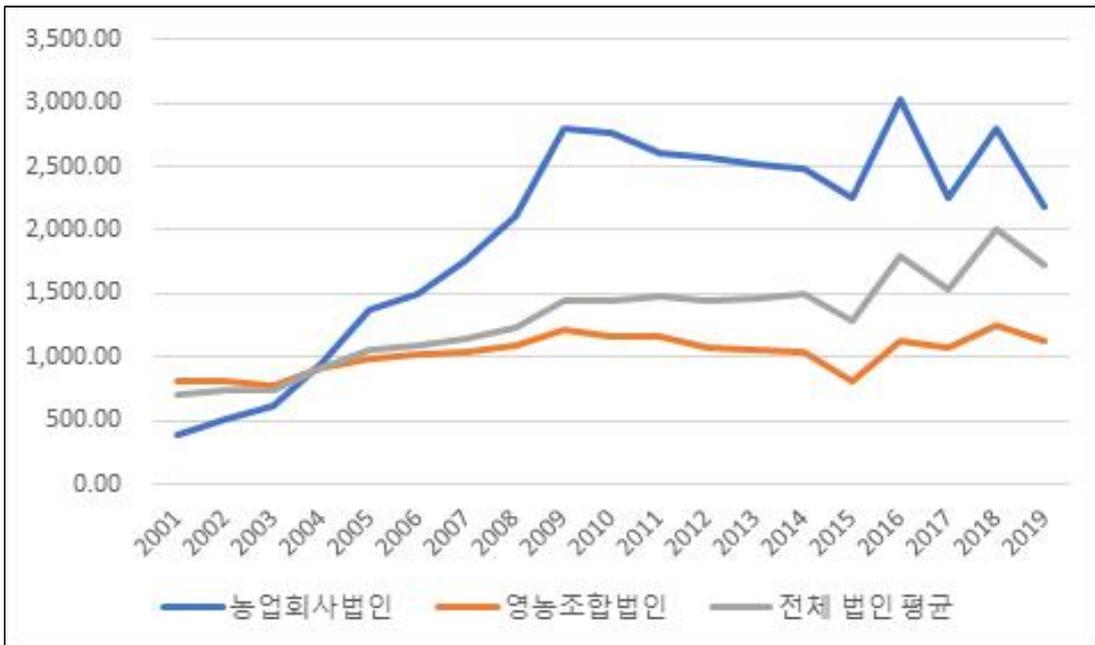
[그림 5] 집계·조사완료 자료 : 농업법인 개소수 변화 (2001~2019)



주 : 전 기간 집계법인 및 조사완료 법인

자료 : 2001~2014년 통계청, 2015~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그림 6] 집계·조사완료 자료 : 농업법인 평균 매출액 추이



주 : 전 기간 집계법인 및 조사완료 법인

자료 : 2001~2014년 통계청, 2015~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표 25] 2018, 2019년 조사완료 농업법인 평균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합계	농업회사	영농조합	합계	농업회사	영농조합
평균 매출액	2,011.9	2,800.4	1,256.8	1,950.0	2,588.3	1,232.1
농업생산수입	418.2	517.4	323.3	416.7	462.1	365.7
작물재배업	177.4	182.5	172.5	204.2	193.2	216.5
축산업	240.8	334.8	150.8	212.5	268.8	149.2
농업생산이외수입	1,593.7	2,283.1	933.5	1,533.3	2,126.2	866.4
농축산물가공업	523.3	750.0	306.2	571.3	810.4	302.4
농축산물유통업	948.0	1,384.3	530.1	873.5	1,227.0	475.9
농업서비스업	28.4	34.8	22.2	23.2	27.6	18.3
관광및음식업	9.4	11.1	7.8	13.2	14.2	12.1
기타사업수입	84.7	102.9	67.2	38.2	34.3	42.6

주 : 전 기간 집계법인 및 조사완료 법인

자료 : 2001~2014년 통계청, 2015~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집계·조사완료 법인의 평균매출액은 2018년 20.1억원에서 2019년 19.5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공통으로 가장 평균매출액이 큰 부문은 농축산물유통업으로 나타났음.
- (종사자) 농업법인 평균 종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까지 감소하다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15년 이후는 통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으로 통계조사가 이관된 수치이기 때문에 교란요인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추세만을 살펴보면 상근출자자와 임시·일용 근로자가 2015~2017년까지 증가하였고, 상용근로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1년 이후 평균 상용근로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보다 평균 상용근로자 수가 약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됨. 2019년 기준 농업회사법인의 상용 근로자 수는 4.8명이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1명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표 26] 농업법인 평균 종사자 추이



평균 종사자 수 추이



평균 상근출자자 추이



평균 상용근로자 추이



평균 임시 및 일용근로자 추이

주 : 전 기간 집계법인 및 조사완료 법인

자료 : 2001~2014년 통계청, 2015~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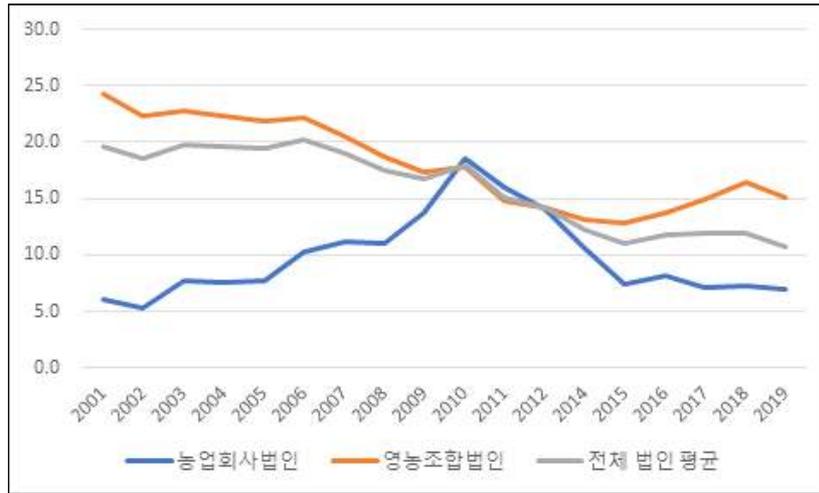
나. 농업법인 출자 구조 변화

□ 집계·조사완료 농업법인 출자자 변화

○ 집계·조사완료 농업법인의 평균 출자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초기의 전체 법인 평균 출자자는 19.6명이었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10.8명으로 파악되었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평균 출자자 수가 2001년 기준 24.2명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01년 기준 평균 출자자 수는 5.9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2010년 기준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출자자 수는 18.5명까지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9년에는 7.0명으로 집계되었음.

[그림 7] 농업법인 평균 출자자 추이



평균 출자자수 추이



농업인 평균 출자자수 추이



비농업인 평균 출자자수 추이

주 : 전 기간 집계법인 및 조사완료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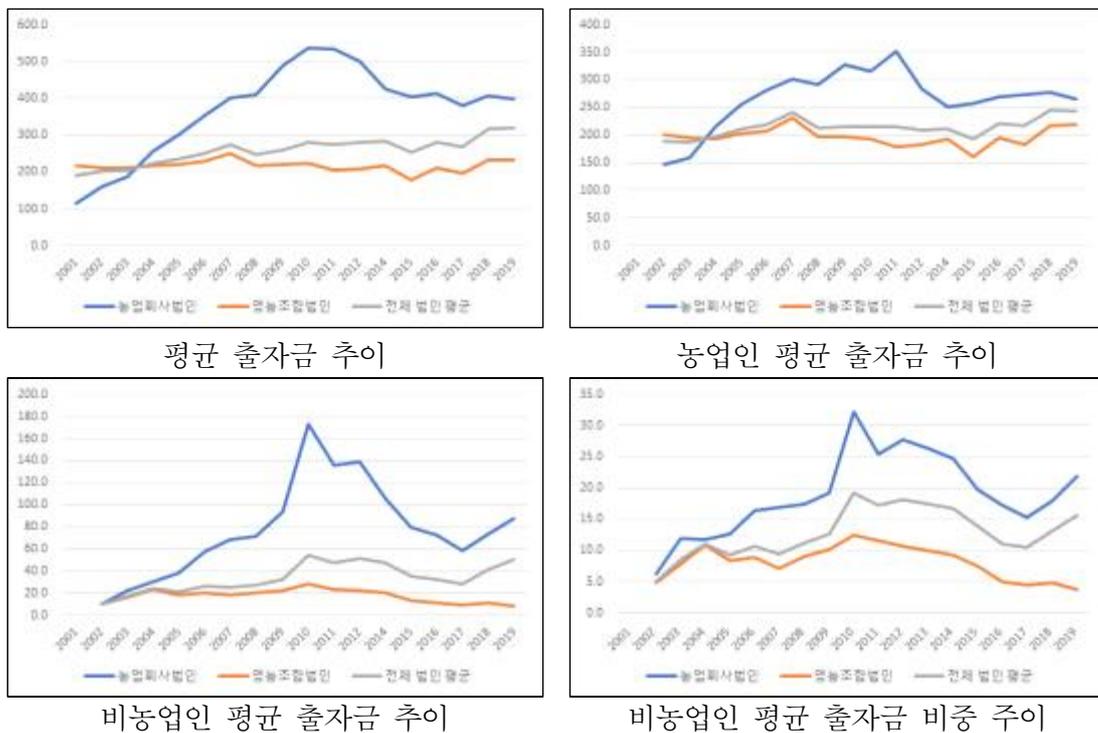
자료 : 2001~2014년 통계청, 2015~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수의 급변동은 비농업인 출자자수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음.
- 전체 법인의 비농업인 평균 출자자 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자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함.
-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비농업인 출자한도가 완화된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014년까지는 평균 2.5명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었으나, 2015년 이후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1.2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집계·조사완료 농업법인 출자금 변화

- 농업법인 평균 출자금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평균 320.4백만원으로 파악되었음.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은 큰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1년 이후 감소하였음.
 - 2019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출자금은 231.3백만원이고, 농업회사법인인 299.6백만원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출자금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 평균 출자금을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큰 변동이 없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함.
 - 출자자수 변화와 연계되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의 출자금 및 비율이 2010년을 정점으로 2015년까지 높았음.
 - 이후 비농업인 출자액과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

[그림 8] 농업법인 평균 출자금 추이



□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과 출자금 규모별 현황

-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을 0%, 0~30%, 30~60%, 60% 이상 구간으로 구분하여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 대비 주요 변수의 추이를 확인하였음.
 - 비농업인 출자금의 경우 총 출자금 대비 비농업인 출자금으로, 2008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 출자금 규모에 따라 농업법인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자금(합계) 구간을 1억원 미만, 1억원 ~ 5억원, 5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 또한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과 출자금 규모를 모두 고려하여, 농업법인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음.
 - 출자금 비중과 출자금 규모를 동시에 고려하여 농업회사법인과 영농법인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였음.
-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별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자 구간이 30%~60% 구간에서 고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008년 기준 30%~60%구간의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종사자 수는 13.8명으로, 2019년 기준 10.0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08년 30~60%구간의 종사자 수가 평균 9.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초반부터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이 60% 이상인 구간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60%이상 구간 영농조합법인의 종사자 수는 평균 10.8명 수준으로 타 구간과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상근출자자의 경우 출자금 비중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상용근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30%~60%구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008년 기준 동 구간 평균 상용 근로자 수는 8.9명이고, 2019년 기준 6.7명으로 타 구간 대비 평균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았음.
 - 영농조합법인도 2019년 기준으로 30%~60%구간이 타 구간보다 평균 상용근로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60%이상 구간에서의 평균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수가 0.8명으로 타 구간의 50% 수준에 그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60%이상 구간의 변동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2008년 기준 2.2명에서, 2019년 기준 7.3명으로 나타났으나, 2015, 2016, 2018년의 경우 0.7~1.2명 수준으로 타 구간보다 낮게 나타났음. 또 2014, 2017년은 각각 3.5, 4.3명으로, 타 구간보다 높았음.

[표 27]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별 종사자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종사자 수	농업회사	0%	10.1	10.8	8.0	8.5	8.2	12.5	7.4	7.6	7.3	7.5	7.9	6.9
		0%~30%	9.7	10.2	10.7	9.3	10.0	10.1	8.8	8.7	10.4	8.1	8.6	7.5
		30%~60%	13.8	14.8	13.5	10.7	12.3	18.7	9.0	9.2	9.5	8.2	8.9	11.6
		60% 이상	7.4	8.1	13.4	11.7	11.2	15.2	8.8	10.1	9.1	9.0	8.1	9.7
	영농조합	0%	7.4	7.0	6.6	6.1	5.9	6.2	6.3	5.9	6.0	6.5	7.6	8.8
		0%~30%	9.3	8.0	7.7	7.4	7.0	7.5	6.4	7.2	8.2	7.9	9.0	7.0
		30%~60%	9.5	8.5	7.7	6.9	6.9	6.5	7.4	7.0	7.1	6.9	7.2	9.8
		60% 이상	7.6	10.6	7.3	9.1	8.3	19.2	6.6	5.3	7.4	11.6	5.0	8.6
상근출자자	농업회사	0%	2.3	2.3	2.0	1.8	1.8	1.6	1.7	1.9	1.8	1.9	1.7	1.7
		0%~30%	1.6	1.5	1.9	1.7	1.7	1.7	1.6	1.7	2.1	1.8	1.7	2.9
		30%~60%	1.6	3.0	1.8	1.6	1.7	1.7	1.7	1.7	1.7	1.8	1.7	2.1
		60% 이상	1.7	1.7	1.7	1.5	1.4	1.2	1.4	1.4	1.6	1.6	1.4	3.1
	영농조합	0%	2.6	2.4	2.5	2.3	2.6	2.9	3.0	3.2	3.2	3.5	2.8	1.8
		0%~30%	2.1	2.0	2.1	1.9	2.1	2.0	2.4	2.6	2.8	2.5	2.2	2.4
		30%~60%	2.5	2.2	2.0	1.7	2.0	2.0	2.0	2.3	2.4	2.2	1.9	1.8
		60% 이상	2.2	2.8	1.9	2.0	1.8	1.6	2.3	4.0	2.0	2.6	2.0	2.5
상용근로자	농업회사	0%	3.9	4.4	4.1	4.6	4.6	8.8	4.1	4.4	4.2	4.0	4.3	3.5
		0%~30%	6.3	6.2	6.1	5.8	6.3	5.9	5.5	5.6	6.8	5.1	5.7	2.2
		30%~60%	8.9	7.6	9.0	6.6	7.3	12.4	5.9	6.5	5.7	5.3	6.4	7.4
		60% 이상	4.5	4.4	9.4	8.6	7.6	11.9	5.9	7.0	6.4	6.7	6.2	4.5
	영농조합	0%	2.2	2.1	1.8	1.8	1.8	1.9	1.9	1.4	1.4	1.4	2.0	5.3
		0%~30%	4.8	3.9	3.5	3.3	2.9	3.8	2.6	3.3	3.5	3.7	3.5	2.5
		30%~60%	3.2	3.4	3.1	3.0	2.9	2.7	3.8	3.5	3.5	3.8	4.0	6.4
		60% 이상	3.3	5.5	3.4	4.2	5.0	14.1	3.1	0.0	4.3	4.7	2.3	3.9
임시 및 일일	농업회사	0%	4.0	4.1	1.9	2.1	1.8	2.1	1.5	1.3	1.2	1.6	1.9	1.7
		0%~30%	1.8	2.5	2.6	1.9	2.0	2.4	1.7	1.4	1.6	1.2	1.1	2.4
		30%~60%	3.4	4.3	2.7	2.5	3.2	4.6	1.5	1.0	2.0	1.2	0.9	2.1
		60% 이상	1.1	2.0	2.3	1.6	2.2	2.0	1.5	1.6	1.1	0.8	0.5	2.0
	영농조합	0%	2.5	2.4	2.2	2.0	1.5	1.5	1.4	1.3	1.4	1.5	2.8	1.7
		0%~30%	2.3	2.1	2.1	2.2	2.1	1.6	1.5	1.3	1.9	1.8	3.2	2.1
		30%~60%	3.8	2.9	2.6	2.2	2.1	1.7	1.6	1.2	1.2	0.9	1.3	1.5
		60% 이상	2.2	2.2	1.9	2.9	1.5	3.5	1.2	1.3	1.0	4.3	0.7	2.2

[표 28]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농업회사	0%	1,808	2,515	2,268	2,328	2,407	4,589	2,329	2,026	2,629	2,048	2,446	2,142
		0%~30%	1,823	3,091	2,966	2,471	2,339	3,216	2,369	2,193	3,373	2,579	3,150	1,193
		30%~60%	3,735	3,994	3,873	3,574	3,507	6,441	2,798	2,928	2,070	3,252	4,285	3,339
		60% 이상	5,487	4,063	4,411	3,187	2,769	4,986	3,330	4,027	4,916	3,240	3,906	2,583
	영농조합	0%	1,019	1,137	1,075	1,075	1,026	1,132	992	769	885	1,042	1,222	3,213
		0%~30%	2,396	2,242	1,749	1,930	1,612	1,655	1,404	1,537	7,098	1,571	1,851	1,532
		30%~60%	1,282	2,224	2,070	1,904	1,545	1,887	1,746	1,551	1,522	2,035	1,924	4,367
		60% 이상	2,763	2,219	1,733	2,232	1,746	3,090	831	103	1,793	1,396	1,715	1,508
농업생산수입	농업회사	0%	732	804	707	837	736	1,451	649	566	268	547	571	438
		0%~30%	746	1,766	838	475	484	586	466	412	282	461	503	364
		30%~60%	1,118	1,854	818	476	837	1,733	426	324	172	277	322	703
		60% 이상	61	1,659	543	630	455	520	391	288	103	161	158	684
	영농조합	0%	304	336	319	298	236	268	248	208	125	265	326	488
		0%~30%	558	498	502	442	305	366	221	330	225	267	349	219
		30%~60%	206	228	324	272	227	255	171	157	104	120	236	511
		60% 이상	2	105	193	288	52	1	9	100	76	0	70	173
농업생산이외수입	농업회사	0%	1,124	1,776	1,571	1,500	1,680	3,144	1,719	85	1,620	1,501	1,876	1,704
		0%~30%	1,095	1,335	2,137	1,998	1,856	2,630	1,947	92	2,156	2,118	2,647	829
		30%~60%	2,629	2,165	3,055	3,099	2,672	4,707	2,593	106	1,453	2,974	3,963	2,636
		60% 이상	5,430	2,419	3,868	2,562	2,316	4,466	2,981	124	4,174	3,079	3,748	1,899
	영농조합	0%	769	840	880	794	804	875	764	84	508	777	897	2,725
		0%~30%	1,901	1,780	1,252	1,499	1,328	1,291	1,189	86	5,995	1,304	1,502	1,313
		30%~60%	1,082	2,014	1,750	1,633	1,321	1,635	1,622	100	1,093	1,915	1,687	3,856
		60% 이상	2,767	2,131	1,541	1,945	1,694	3,089	829	89	1,403	1,396	1,645	1,336

[표 29] 비농업인 출자금, 출자 규모별 종사자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1억	1~5	5억 이상	1억	1~5	5억 이상	1억	1~5	5억 이상	1억	1~5	5억 이상		
종사자 수	농업회사	0%	4.4	6.4	19.4	4.3	6.9	18.9	4.3	7.8	16.9	4.1	7.6	15.1	
		0%~30%	4.2	8.5	20.0	3.6	8.5	20.6	4.0	9.1	18.6	5.3	8.7	21.0	
		30%~60%	6.4	8.5	19.0	4.1	7.9	17.2	4.4	8.2	16.9	4.5	8.0	18.6	
		60% 이상	4.8	8.0	21.1	4.9	7.9	16.5	5.3	8.3	16.1	6.4	8.8	19.0	
	영농조합	0%	4.6	6.5	10.2	5.3	6.9	11.1	5.7	8.1	11.5	5.8	8.0	11.9	
		0%~30%	5.2	7.2	18.5	4.9	7.5	17.8	4.8	8.4	16.1	6.7	8.3	15.2	
		30%~60%	4.3	7.4	12.2	4.3	8.9	14.1	4.3	11.3	11.9	4.0	8.0	10.3	
		60% 이상	6.4	6.5	11.6	6.1	7.6	9.9	4.8	7.2	9.5	8.8	6.6	11.2	
	상근출자자	농업회사	0%	1.7	1.9	1.8	1.8	2.0	1.8	1.6	1.7	1.8	1.6	1.8	1.7
			0%~30%	2.0	1.8	2.7	1.8	1.9	2.2	2.0	1.6	2.1	2.4	1.9	2.1
			30%~60%	1.8	1.7	1.6	1.6	1.9	2.1	1.6	1.6	2.2	1.5	1.8	2.2
			60% 이상	1.5	1.6	1.8	1.7	1.7	1.9	1.6	1.5	1.9	1.7	1.8	2.1
영농조합		0%	3.2	3.2	3.0	3.5	3.5	4.0	2.6	2.9	2.9	2.7	3.0	3.1	
		0%~30%	2.9	2.6	3.4	2.7	3.2	3.3	2.0	3.2	2.8	2.0	3.7	3.0	
		30%~60%	2.4	2.3	2.4	2.5	2.5	2.4	2.0	2.5	2.1	2.0	2.6	2.4	
		60% 이상	2.4	1.7	2.1	2.4	2.0	2.5	2.1	1.7	2.2	2.7	2.0	2.6	
상용근로자		농업회사	0%	1.8	3.1	15.7	1.6	2.9	14.6	1.8	3.5	13.5	1.7	3.6	10.4
			0%~30%	1.5	5.4	14.5	0.9	4.9	16.3	1.6	5.8	15.2	2.1	5.5	14.5
			30%~60%	2.3	5.0	15.4	1.6	4.5	14.3	2.0	5.2	13.9	2.0	4.5	13.6
			60% 이상	2.7	5.5	16.6	2.7	5.2	12.6	3.1	5.9	13.2	3.4	5.7	14.2
	영농조합	0%	0.6	1.5	5.1	0.6	1.5	5.4	0.9	1.9	5.8	1.2	2.4	5.6	
		0%~30%	1.4	2.8	10.8	1.3	3.1	10.8	1.6	3.8	10.6	3.2	2.7	9.3	
		30%~60%	1.3	3.2	9.0	1.0	3.8	10.3	0.8	3.7	9.0	1.1	2.2	6.6	
		60% 이상	3.2	4.1	7.7	3.0	3.7	6.0	2.5	3.7	5.8	3.1	3.9	6.9	
	임시및일일	농업회사	0%	0.9	1.3	1.9	0.9	2.0	2.5	1.0	2.7	1.6	0.9	2.2	3.0
			0%~30%	0.7	1.3	2.8	0.9	1.8	2.1	0.5	1.8	1.2	0.9	1.3	4.3
			30%~60%	2.4	1.8	2.0	0.9	1.5	0.9	0.8	1.4	0.8	1.0	1.7	2.8
			60% 이상	0.6	1.0	2.7	0.5	1.1	2.0	0.6	0.8	1.0	1.3	1.3	2.7
영농조합		0%	0.9	1.7	2.0	1.2	1.9	1.7	2.1	3.3	2.8	1.9	2.7	3.3	
		0%~30%	0.9	1.8	4.3	1.0	1.2	3.7	1.2	1.4	2.7	1.5	1.8	2.9	
		30%~60%	0.6	1.9	0.8	0.9	2.5	1.4	1.6	5.1	0.8	0.9	3.2	1.2	
		60% 이상	0.9	0.8	1.8	0.6	1.8	1.3	0.2	1.8	1.5	3.1	0.7	1.7	

[표 30] 비농업인 출자금, 출자 규모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1억	1~5	5억 이상	1억	1~5	5억 이상	1억	1~5	5억 이상	1억	1~5	5억 이상
매출액	농업회사	0%	805	2,094	10,029	886	1,754	6,409	1,253	2,177	6,656	1301	2115	5735
		0%~30%	2,115	2,075	6,965	1,590	1,948	6,758	1,477	2,447	5,730	1116	2656	6115
		30%~60%	802	1,875	5,333	832	2,213	7,298	1,220	2,718	7,986	1115	3080	7283
		60% 이상	1,483	5,241	10,120	1,832	3,169	6,033	2,461	4,030	7,772	2606	4065	8543
	영농조합	0%	324	868	4,122	389	903	3,304	506	1,176	3,827	567	1223	3833
		0%~30%	555	1,648	40,559	503	1,627	38,933	658	2,135	5,929	985	1604	6123
		30%~60%	546	1,657	3,224	560	1,666	3,822	601	1,608	5,471	431	1105	5110
		60% 이상	828	1,663	4,188	939	1,930	3,975	1,427	2,159	2,122	1058	1885	2651
농업생산수입	농업회사	0%	47	383	573	184	383	2,244	250	419	2,036	239	391	1472
		0%~30%	156	253	456	289	544	2,030	122	671	1,365	21	591	1375
		30%~60%	46	186	374	78	340	1,635	88	357	1,728	304	309	1736
		60% 이상	47	93	248	122	177	739	139	198	844	203	228	1955
	영농조합	0%	56	150	423	115	262	1,056	136	296	1,177	190	352	1219
		0%~30%	57	111	991	141	288	2,302	216	246	1,585	94	416	1796
		30%~60%	60	102	204	130	222	791	391	258	545	105	227	428
		60% 이상	19	133	74	12	146	218	36	344	190	156	216	163
농업생산이외수입	농업회사	0%	489	1,387	6,674	703	1,371	4,165	1,002	1,758	4,620	1301	2114	5735
		0%~30%	1,599	1,129	4,742	1,301	1,405	4,728	1,355	1,776	4,365	1116	2656	6115
		30%~60%	594	1,456	3,147	754	1,872	5,663	1,132	2,361	6,258	1115	3080	7283
		60% 이상	1,263	4,557	8,542	1,710	2,992	5,294	2,322	3,832	6,929	2606	4065	8543
	영농조합	0%	180	567	2,297	274	641	2,247	370	880	2,650	567	1223	3833
		0%~30%	440	1,307	34,228	362	1,340	36,631	442	1,888	4,344	985	1604	6123
		30%~60%	412	1,316	1,878	430	1,444	3,031	209	1,350	4,927	431	1105	5110
		60% 이상	671	1,387	3,161	927	1,784	3,758	1,391	1,815	1,931	1058	1885	2651

-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이 30%~60% 구간의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이 60%인 구간에서 가장 많았으나, 2011년 이후 역전되었음.
 - 영농조합법인도 30%~60% 구간에서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농업생산수입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이 0~30% 구간에서 매출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9년 기준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이 0~30%인 구간에서의 농업생산수입은 364백만원으로, 타 구간(433~684백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기준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이 60% 구간에서의 평균 매출액은 173백만원으로 확인되었음.
- 농업생산이외수입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낮은 구간은 비농업인 출자금 비율이 0~30%인 구간으로 확인되었음.
 -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기준 평균 매출액이 가장 낮은 구간은 비농업인 출자자가 0~30% 이상인 구간이었으나, 2008년 이후 추세를 살펴보면 비농업인 출자자가 0%인 구간에서의 평균 매출액이 낮았음.
- 비농업인 출자금 비율과 출자금 규모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평균 종사자의 경우 출자 규모가 5억 이상인 법인에서 가장 많았으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모두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이 0~30%이며 출자금 규모가 5억 이상인 법인에서 평균 종사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상용근로자의 경우 출자금 규모가 5억인 구간에서 모두 평균 인원수가 가장 많았으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자 비율이 0~30%이며 출자금 규모가 5억 이상인 구간에서 평균 상용근로자가 많았음.
 -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며, 비농업인 출자금 비율이 0~30%, 출자금 규모가 5억 이상인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비농업인 출자금 비율과 출자금 규모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출자 규모가 5억 이상이며 비농업인 출자자 비율이 0~30%인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0~60%, 출자금 규모는 1억 이상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음.
- 농업생산수입의 경우, 출자금 5억 이상의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비농업인 출자금 비율은 0, 0~30% 구간의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영농조합법인은 특히 출자금 5억 이상, 비농업인 출자금 규모는 0, 0~30% 구간의 매출액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농업생산이외수입에서는 출자금 규모가 5억 이상인 법인의 평균 매출액이 높게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금 규모 5억 이상,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이 60% 이상인 구간에서 평균 매출액이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자금 규모가 5억 이상이며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이 0~30%, 30~60% 구간에서의 매출액이 특히 높게 나타났음.

다. 대규모 농업법인의 시기적 변화

□ 검토 이유 및 자료

- 2001년 ~ 2019년까지 농업법인조사·농업법인실태조사 결과를 정선한 본 연구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매출액 규모 각 상위 10위까지의 사업체들을 주요 연도별로 변화를 검토함.
- 농업법인도 분할, 신설, 합병 등 다양한 역사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별 농업법인의 매출액만을 가지고 사업체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축산사업체의 경우 “계열화” 체계에 따라 규모화된 사업영역을 새롭게 분할하여 법인이 신설되는 등 변화가 있었음.
- 하지만, 농업법인 체제를 대표하는 상위 농업법인들의 변화를 이해하면 농업법인 전반의 변화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음.
 - 대규모 농업법인들의 매출 규모 특성, 주요 사업 영역 변화 등을 파악하여 농업법인 체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분석 및 검토

- 2001년의 경우 농업법인 개소수가 3,000개 내외로 활성화되기 이전이며,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 상위 조직을 보면, 현재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 농업회사법인 1위 매출액 사업체는 유한회사 형태의 농산물 유통법인으로 178억원 규모였으며, 종돈·양돈 관련 사업체들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1위 매출액 사업체는 대규모 양곡도정 사업체로 225억원 규모였으며, 양계·가공 사업체들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당시 조직들 중 현재까지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폐업 상태인 경우도 있는 등 오랜 시간의 시장·산업의 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2011년 이후의 상위 매출 농업법인을 보면, 가금·축산 분야의 사업체들이 위치하면서 이후 대규모 사업체들이 어느 정도 고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으로는 가금·계란 분야, 양돈 분야의 종돈·사료 전문 사업체가 대표적이며 이외에 축산물 가공·유통 분야에서 상위 매출 사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으로는 농산물 유통 전문 사업체가 1위 매출 규모를 갖춘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장 큰 매출 규모를 보이면서 성장하였음. 이외에 축산물 유통 업체들이 대규모 매출 조직으로 위치하고 있음.
- 이외에 2015년, 2019년 자료를 보면, 상위 10위 농업법인으로 종자·종묘, 낙농·유가공, 곡물(쌀·잡곡) 가공 등 다양한 부문의 농업법인들이 상위 조직으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년도 자료인 2019년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중에 축산물유통 이외에 식량작물·판매 사업체들이 다수 포함된 특징이 있음.

□ 상위 매출액 농업법인의 특징

- (상위 사업체 규모 확대) 특징적으로는 상위사업체의 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표 31] 2001, 2015, 2019년 매출규모 상위 10위 사업체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1위 매출액		상위 10위 평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001	17,785	22,497	13,693	17,414
2011	136,746	72,945	72,331	45,967
2015	178,925	87,000	108,860	47,151
2019	257,315	114,021	159,700	54,111

주 : 각 년도 농업법인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하였음.

- 시간이 경과하고 대규모 농업법인의 경영체제가 안정성을 갖추면서 이들 사업체들의 규모 확대 현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 1위 매출액 : 2011년 1,367억원 → 2019년 2,57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영농조합법인 1위 매출액 : 2011년 729억원 → 2019년 1,14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이외에 상위 10위 평균매출액으로 보아도 농업회사법인이 2011년 136.9억원 → 2019년 1,597.0억원으로, 같은 기간 영농조합법인은 174.1억원 → 541.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축산계열화 사업체) 매출규모 상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축산 관련 계열화 사업체의 주요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
 - 상위 10위권 밑에서도 주요한 대규모·중견규모 축산 계열화 체계에 속한 축산물 도축·유통, 사료제조, 축산서비스 사업체들이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각각에서 주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

※ (참고) 대기업 계열 농업법인에 대하여

- 2010년대에 대기업이 농업법인(특히,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투자하여 계열회사로 두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이로부터 농업에 대한 기업진출 통로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있었음.
- 농업법인 매출액 상위 10대 사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관련 사업체는 2011년 아그로닉스(주) [대상 계열], (주)동부팜 [동부그룹 계열]이 파악됨.
- 동부팜은 대규모농업회사로 시화·화옹지구 간척지의 유리온실 건립을 추진하다가 농업계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을 포기·매각. 아그로닉스(주)의 경우 김치제조 원료 농산물 매입·계약재배 등 사업 등을 전개하였으나 2016년 폐업하였음.
- 언론 보도에서 일부 대기업 그룹의 농업법인 참여가 나타나기도 하고, 현대서산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와 식품기업이 지자체 공동투자 및 협력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2019년 상위 10위 농업법인 리스트에서는 대기업이 직접 참여·투자한 농업법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3.3.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가. 분석방법 : 이중차분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DID)

-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중차분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방법론을 적용함. 이중차분분석은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Ashenfelter · Card(1985)가 처음 도입한 뒤 다양하게 활용되었음.
- 일반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음.

$$E(Y_1) - E(Y_0)$$

- 즉, 아래의 패널회귀분석 식을 이용할 경우 정책효과($\hat{\beta}_1$)를 추정할 수 있음.

$$Y_{i,t} = \beta_0 + \beta_1 T_{i,t} + \theta_i + u_{i,t}$$
$$T_{i,t} = \begin{cases} 1 & \text{if } t = 1 \\ 0 & \text{if } t \neq 1 \end{cases}$$

- 그러나 위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할 경우 시점에 따른 모든 변화를 정책효과로 식별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hat{\beta}_1$ 이 정책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두 집단이 정책적인 효과 외 다른 측면에서는 모두 유사’ 해야 함.
- 또한 집단을 연구자가 선택하기에 선택 편향(selection bias)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음. 따라서 패널회귀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정책의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에 대해 통제된 후 추정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자료 내에서 1. 집단의 특성을 관측(측정)이 가능할 경우와 2. 관측할 수 없거나 측정할 수 없는 집단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함.

○ 이중차분분석 추정기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과 후, 정책 수혜와 비수혜 받은 집단에 대한 4가지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정책 시행 시점 (전 <-> 후)	
정책 수혜	정책 수혜 집단(treat)의 정책 시행 전 자료 (1)	정책 수혜 집단(treat)의 정책 시행 후 자료 (2)
	정책 비수혜 집단(control)의 정책 시행 전 자료 (3)	정책 비수혜 집단(control)의 정책 시행 후 자료 (4)

- (1) 정책 수혜 집단(treat)의 정책 시행 이전

$$Y^0 = \gamma + \eta^0$$

- (2) 정책 수혜 집단(treat)의 정책 시행 이후 ($D =$ 정책효과)

$$Y^1 = D + \gamma + \eta^1$$

- (3) 정책 비수혜 집단(control)의 정책 시행 이전

$$Y^0 = \lambda + \theta^0$$

- (4) 정책 비수혜 집단(control)의 정책 시행 이후

$$Y^1 = \lambda + \theta^1$$

- 따라서 정책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 정책 시행 전후를 차분한 뒤, 결과변수의 값의 차분을 빼는 것으로 구할 수 있음.

정책 수혜 집단(treat) 차분 : $Y^1 - Y^0 = (D + \gamma + \eta^1) - (\gamma + \eta^0) = D + (\eta^1 - \eta^0)$

정책 비수혜 집단(control) 차분 : $Y^1 - Y^0 = (\lambda + \theta^1) - (\lambda + \theta^0) = \theta^1 - \theta^0$

정책 수혜 집단(treat) 결과 - 정책 비수혜 집단(control) 결과 = $D + (\eta^1 - \eta^0) - (\theta^1 - \theta^0)$

- 정책 효과인 D 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eta^1 - \eta^0) - (\theta^1 - \theta^0) = 0$$

$$(\eta^1 - \eta^0) = (\theta^1 - \theta^0)$$

- 위 조건은 이중차분분석의 평행 추세 가정(parallel-trend assumption)으로, 두 집단 간 시간에 의해 변하지 않는 특성을 제거할 수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점 전후 간 4기($t \pm 4$)의 자료가 필요함.

나. 농업회사법인 :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 효과 분석

□ 분석 대상 추출

-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 구간 변경이 농업회사법인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였음.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 완화는 이미 2004년 50% → 75%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에는 75% → 90%로 완화되었음.
 - 통상적으로 정책·제도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변화 시점 $t \pm 4$ 기간 이상의 자료가 필요.
- 2004년 제도 변화를 점검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분석과 결과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제도 변화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음.
- 2009년 9월에 제도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제도 수혜 집단은 +1년인 2010년의 비농업인 출자자 구간 75% 이상 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책 비수혜 집단은 동일하게 2010년 기준 비농업인 출자자 구간 75% 미만인 집단으로 설정함.
- 종속 변수로는 농업 법인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2020년이 100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 분석 결과 1 : 원데이터 활용

○ 우선적으로 Parallel-trent asumption을 확인하기 위해, 2009/10년 정책 시행 시점 전의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매출액 추이가 비슷한지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음.

- 2009/10년 기준의 두 집단의 추세선이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계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DID 분석을 시행하였음.

[표 32] 2009/10년 농업회사법인 제도 개편 수혜, 비수혜 집단 관측치

(단위 : 건)

2009/10년 기준	제도 변화 시점	
제도 수혜	제도 수혜(treat) 집단의 제도 시행 전 자료 (관측치 : 1,068)	제도 수혜 집단(treat)의 제도 시행 후 자료 (관측치 : 6,587)
	제도 비수혜 집단(controll)의 제도 시행 전 자료 (관측치 : 4,949)	제도 비수혜 집단(control)의 정책 시행 후 자료 (관측치 : 42,006)

[그림 9] 2009/10년 비농업인 출자자 구간 75% 기준 매출액 추이(원자료)

(단위 : 백만원)



[표 33] 2009/10년 비농업인 출자금 완화 이중차분분석 결과 : 매출액 (원자료)

(단위 : 백만원)

구분	시행 전 (A)	시행 후 (B)	시점 차이 (B-A)
제도 비수혜 집단 (비농업인 75% 미만) (C)	998.88	2,245.67	2,146.79
제도 수혜 집단 (비농업인 75% 이상) (D)	989.47	3,785.78	2,796.31
집단 차이 (D-C)	-9.42	1,540.11	1,549.53*** (378.50)

주1) ()안 값은 표준오차

주2)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이중차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9/10년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금 완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비농업인 출자금이 75% 이상인 집단에서 비농업인 출자금 제한을 완화시켰을 경우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효성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비농업인 출자비중 75% 이상인 법인은 기준 시점 이후 매출액이 27.96억원 증가하였고, 미만인 법인은 21.47억원이 증가하였음.
- 두 집단간의 차이는 15.5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효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분석 결과 2 : 이상치(Outliers) 제거 (Z-score 3.0이상) 데이터 활용

- 원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의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나, 매출규모 상·하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 비농업인 출자금 한도를 완화한 정책적 효과를 추가로 검증했음.
- 이상치 탐색 방법으로는 표준화 점수(Z-score)를 활용함. 일반적으로 표준화 점수의 절대값 3.0 이상을 이상치로 정의함. 따라서 절대값 3 이상의 값을 제거한 자료를 활용하였음.

※ [참고] 표준화 점수(Z-score)를 활용한 이상치 제거¹⁰⁾

- 이상치 제거 방법은 표준화점수, 사분위수범위, 회귀진단, 미할라노비스 거리, 지수 가중이동평균 등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음.
- 표준화 점수는 평균이 μ 이고 표준편차가 σ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관측치들이 자료의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임.
- 표준화 점수법은 일정 Z-score 이상, 결국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상치를 판별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절대값 3을 적용하여 처리하였음.

[표 34] 농업회사법인 매출액 기초통계량

(단위 : 건)

연도	원 자료	Z-score 3.0 이상 제거
관측치	54,610	54,227
평균	2,441.88	1,919.73
표준편차	11,045.69	4,033.80

[표 35] 2009/10년 농업회사법인 제도 개편 수혜, 비수혜 집단 관측치 : 매출액 (이상치 제거)

(단위 : 건)

2009/10년 기준	제도 변화 시점	
제도 수혜	제도 수혜 집단(treat)의 정책 시행 전 자료 (관측치 : 1,063)	제도 수혜 집단(treat)의 제도 시행 후 자료 (관측치 : 6,513)
	제도 비수혜 집단(control)의 정책 시행 전 자료 (관측치 : 6,513)	제도 비수혜 집단(control)의 정책 시행 후 자료 (관측치 : 41,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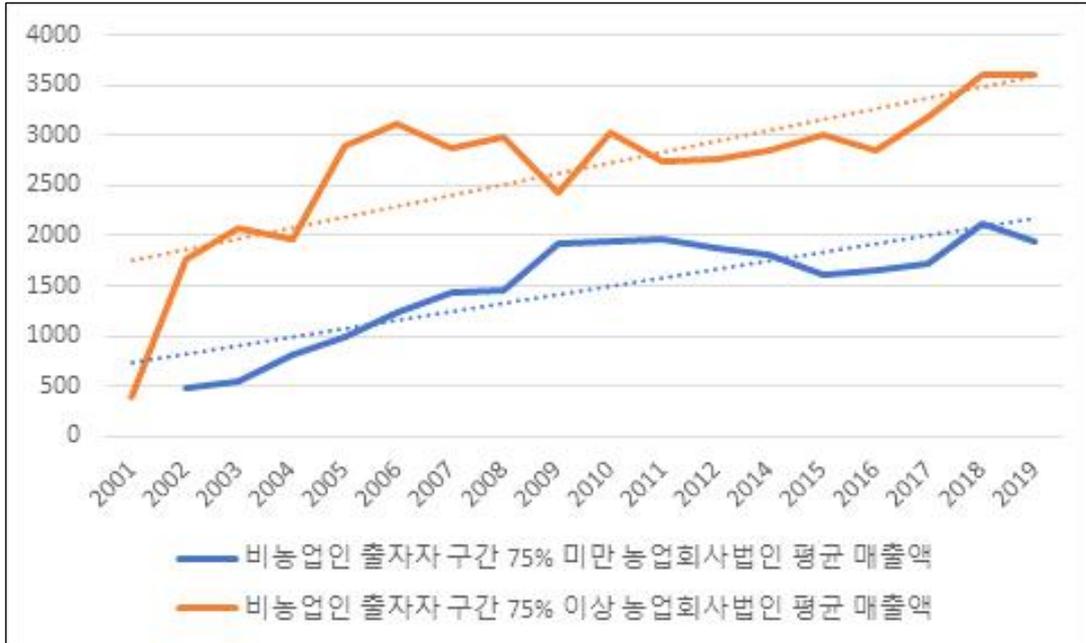
○ 우선적으로 Parallel-treat assumption을 확인하기 위해, 이상치를 제거한 자료를 활용하여 2009/10년 정책 시행 시점 전의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매출액 추이가 비슷한지를 그래프로 확인하였음. (다음의 그림)

- 2009/10년 기준의 두 집단의 추세선이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계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DID 분석을 시행하였음.

10) 선정연 외, (2019), 이상치 탐색을 위한 통계적 방법과 활용 방안

[그림 10] 2009/10년 비농업인 출자금 75% 기준 매출액 추이(이상치 제거)

(단위 : 백만원)



[표 36] 2009/10년 비농업인 출자금 완화 이중차분분석 결과 : 매출액 (이상치 제거)

(단위 : 백만원)

구분	시행 전 (A)	시행 후 (B)	시점 차이 (B-A)
제도 비수혜 집단 (비농업인 75% 미만) (C)	819.58	1,756.98	937.4
제도 수혜 집단 (비농업인 75% 이상) (D)	792.70	3,004.65	2,211.95
집단 차이 (D-C)	-26.89	1,247.67	1,274.56*** (136.41)

주1) ()안 값은 표준오차

주2)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분석결과 원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법인 출자금 한도 완화 정책이 농업회사법인의 성과를 대표하는 매출액을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원데이터와 달리 이상치를 제거한 경우는 규모가 큰 상위 사업체의 자료가 제외되는 효과가 있음.
- 비농업인 출자비중 75% 이상인 법인은 기준 시점 이후 매출액이 22.12억 원 증가하였고, 반면, 75% 미만인 법인은 9.37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음.
- 두 집단간의 차이는 12.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한편, 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와 이상치제거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가 모두 유의성을 갖춘 점을 확인.
- 데이터를 안정화 시키기 전후에 통계적 유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의 효과성을 보다 확고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다. 영농조합법인 : 법인세 면제 범위 축소

□ 분석 대상 추출

- 영농조합법인 제도는 사업 범위, 출자자 구성 요건 등에서 1993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음.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극적으로 완화해 왔던 농업회사 법인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2010년 이후에 이루어진 주요한 변화는 2014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가 조정되었고, 2015년 농촌관광·휴양사업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것이 있음.
- 2014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기존 작물재배업에서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축소하고, 과세 면제 한도도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로 설정하였음.
- 식량작물 재배를 제외한 여타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로 전환된 것이며, 조합원 수에 따라 면제한도가 부여된 것임.
- 2015년 농촌관광·휴양사업 범위 확대는 이를 법에 명시하여 체계화한 효과가 있으나, 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로서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미 이전부터 영농조합법인들이 관련 사업으로서 농촌관광·휴양마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임. 농촌관광·휴양사업을 법에 명시한 것이 현실에서 변화를 초래할 효과는 다소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통계 원자료에서 2014년 이전의 자료에서는 농업생산에 해당하는 작물재배업, 축산업을 제외한 이외의 사업이 코드화 되어 세부 유형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관광·휴양사업을 분리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 제도변화의 영향 집단은 작물재배업으로 설정하고, 비영향 집단은 이외의 모든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보다 엄밀하게는 작물재배업 내에서도 식량작물재배업과 이외의 작물로 구분해야 하나, 세부 품목 구분이 없는 통계 자료의 한계가 있기도 하나 제도 변화 후 작물재배업 유형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분 기준을 정리하였음.
 - 작물재배업 내에서도 식량작물 이외의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의 제도 변화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종속 변수로는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하게 경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2020년이 100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 분석 결과 1 : 원데이터 활용
- Parallel-trent asumption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유형이 작물재배업인 집단과 그 외 모든 사업유형 집단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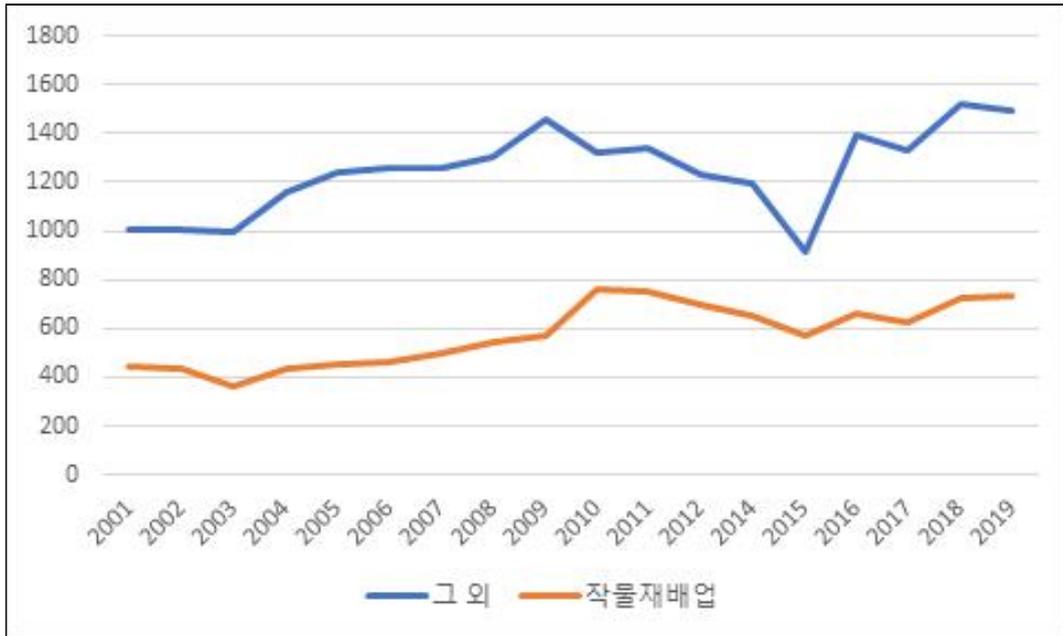
[표 37] 2014/15년 영농조합법인 제도개편 영향, 비영향 집단 관측치

(단위 : 건)

2014/15년 기준	제도 변화 시점	
제도 영향	제도 영향 집단(treat)의 제도 시행 전 자료 (관측치 : 18,290)	제도 영향 집단(treat)의 정책 시행 후 자료 (관측치 : 17,838)
	제도 비영향 집단(control)의 제도 시행 전 자료 (관측치 : 43,064)	제도 비영향 집단(control)의 정책 시행 후 자료 (관측치 : 34,051)

[그림 11] 2014/15년 제도 수혜, 비수혜 집단 간 평균 매출액 추이(원자료)

(단위 : 백만원)



[표 38] 2014/15년 기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범위 조정 이중차분 분석 결과 (원자료)

(단위 : 백만원)

	시행 전 (A)	시행 후 (B)	시점 차이 (B-A)
제도 비영향 집단 (작물재배업 이외) (C)	1,022.38	1,254.57	232.19
제도 영향 집단 (작물재배업) (D)	492.53	633.72	141.19
집단 차이 (D-C)	-529.85	-620.85	-91.00 (97.67)

주1) ()안 값은 표준오차

주2)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이중차분 분석결과, 법인세 면제 범위 조정이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2014/15년을 전후하여 작물재배 영농조합법인과 그 이외 사업 유형의 영농조합법인 두 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두 집단간 평균 매출액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분석 결과 2 : 이상치(Outliers) 제거 (Z-score 3.0이상) 데이터 활용

○ 영농조합법인 제도변화의 효과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Z-score 3.0 이상 이상치(Outliers)를 제거한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음.

[표 39] 2014/15년 영농조합법인 제도개편 수혜, 비수혜 집단 관측치 : 매출액 (이상치 제거)
(단위 : 건)

2014/15년 기준	제도 변화 시점	
	제도 영향	제도 영향 집단(treat)의 정책 시행 전 자료 (관측치 : 18,227)
	정책 비영향 집단(control)의 제도 시행 전 자료 (관측치 : 42,916)	제도 비영향 집단(control)의 정책 시행 후 자료 (관측치 : 33,866)

[그림 12] 2014/15년 제도 영향, 비영향 집단 간 평균 매출액 추이(이상치 제거)
(단위 : 백만원)



- 우선적으로 Parallel-trent asuumption을 확인하기 위해, 이상치를 제거한 자료를 활용하여 2014/15년 제도 시행 시점 전의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매출액 추이가 비슷한지를 그래프로 확인하였음.
- 이상치를 제거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두 집단의 평균 매출액 변화 방향은 유사한 경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표 40] 2014년 기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범위 조정 이중차분 분석 결과 (이상치 제거)
(단위 : 백만원)

구분	시행 전 (A)	시행 후 (B)	시점 차이 (B-A)
제도 비영향 집단 (작물재배업 이외) (C)	927.75	966.46	38.71
제도 영향 집단 (작물재배업) (D)	465.23	557.52	92.29
집단 차이 (D-C)	-462.52	-408.93	53.58 (26.43)

주1) ()안 값은 표준오차

주2)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이상치를 제거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범위 조정이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원자료 데이터와 동일하게 2014/15년을 전후하여 작물재배 영농조합법인과 이외 사업 유형의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은 모두 증가하였음.
-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도 영향·비영향 집단간 평균 매출액 차이와 예상하는 부호 등 결과자료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하였음.

3.4. 분석결과 검토

□ 농업법인 조사 집계·실측 법인의 주요 변화 파악

- 농업법인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매출구조 및 출자자 구조를 파악하였음.
- 2010년 이후 농업회사법인의 전체 합계 매출액이 커지고, 출자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는 2010년 ~ 2015년에 걸쳐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수 증가, 평균 출자금의 증가와 비농업인 출자자 및 출자액 증가로 이어지는 등 일부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2009년 이후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품목대표조직, 시군유통회사, 대규모 농어업 회사 등 육성책이 맞물리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됨.
- 한편, 농업법인별 평균 매출액 규모는 2010년 이후 증가하지 못하여 정체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일부 예외적인 연도를 제외하면, 농업회사법인 평균 매출액은 20억원 내외, 영농조합법인은 10억원 내외에서 변화하고 있음.
 - 반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각각의 매출규모 10위 사업체를 연차별로 검토한 결과 이들 법인들은 2019년 700~1000억원의 매출 규모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확대를 달성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음.
- 법인별로 보았을 때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과 비교하여 다소 활력이 부족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비교하여 법인별 평균 출자자 수가 많으나, 평균 매출액과 출자액 규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영농조합법인 1인 1표의 의사결정 구조, 높은 작물재배업 비중¹¹⁾, 농촌 마을형 복합사업 추진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11) 2019년 농업법인 조사에서 작물재배업 비중이 영농조합법인은 32.8%, 농업회사법인은 25.5%로 차이가 있었음.

□ 제도 변화의 농업법인 성과에 미친 영향

-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 법인 각각에 대해 중요한 제도 변화가 법인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90%로 확대한 2009년을 전후하여, 제도 수혜 법인과 비수혜 법인을 구분하여 평균 매출액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증했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범위를 축소한 2014년을 전후하여, 제도 영향 법인(작물재배 유형)과 비영향 법인(작물재배 이외 유형)을 구분하여 평균 매출액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증하였음.
- 농업회사법인은 제도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모두 일정한 매출 향상 효과가 있었으며, 원자료와 이상치를 제거한 자료 모두에서 비농업인 출자 한도 완화가 법인의 매출액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 모든 농업회사법인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상치에 해당하는 상하위 법인 자료를 제거하여 활용하여도 비농업인 출자 비율을 완화한 제도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 농업회사법인이 2010년 이후 개소수와 함께 매출액 증가한 상황을 통계 분석을 통하여 검증·확인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범위를 축소한 효과와 관련하여, 비교 집단간의 격차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분석방법과 원칙을 적용. 모든 영농조합법인 자료와 이상치를 제거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통계적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 감면 범위 축소에 따른 평균매출의 변화 방향과 크기를 확정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다만, 분석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작물재배 유형과 이외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다시 확인하였음. 작물재배 유형은 그 외의 유형과 비교하여 평균 매출액이 연차별로 안정적이나 규모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4. 농업법인 현장조사

4. 농업법인 현장조사

4.1. 필요성 및 방향

□ 배경

- 제도, 통계 분석과 함께 농업법인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면담 조사를 추진하였음.
- 정책 조사, 경영 사례, 농산물 생산·판매 등 특정한 목적을 둔 현장 조사, 사례조사는 있었으나 농업법인 제도 운영과 특성에 집중한 현장 조사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였음.
 - 농업법인의 설립 계기, 실제 운영 방식, 구성원 활동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례적으로 접근하였음.
- 또한, 제도와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농업법인 체제의 특징, 현실의 운영 상황을 우수·문제 사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음.

□ 방향

- 농업법인 법인격, 사업 유형, 출자금 규모, 비농업인 출자금 비율 등 핵심 요소로 면담 대상을 유형화.
 - 농업법인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각의 유형화 가능성과 특징을 구분하는 방안을 시도하였음.
- 현장 방문·전화 면담 조사를 본 연구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여 제도, 통계 분석 진행의 시사점과 직접 연계하도록 하였음.
 - 농업법인 운영의 제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운영 특성과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 매출규모, 업종 등 주요 수치는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농업법인 설립 목적과 주요 변화, 주사업의 운영 방식, 법인 운영·관리 상의 애로점과 개선요청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음.
 - 한편, 매출액, 출자자 수 등 구체 수치의 경우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면담 조사의 한계를 고려했음. 농업법인조사 통계 원자료 결과와 일치성을 면담에서 확인하되, 분석치는 2019년 통계 원자료의 수치를 활용하였음.

4.2. 조사 개요 및 조사 실행

□ 개요

- (기간) 2021년 11월 ~ 2022년 2월
- (조사방법) 개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및 전화 면담 조사.
 - 현장 조사는 본 연구 담당자 1인 혹은 2인으로 직접 면담(방문, 전화)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2020~2021년을 기준으로 하는 출자자, 매출액, 종사자 등 수치 정보와 농업법인 설립 목적, 주요 연혁(변동 사항) 등을 질문하여 파악하였음.
 - 이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농업법인 제도 변화의 인지 여부와 애로·문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 면담 방식으로 파악하였음.

□ 조사 대상

- 조사대상은 법인격, 사업유형, 출자금 비율을 핵심적인 구분 요소로 활용하여 대상 법인을 사전에 선정하였음.
 -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① 사업유형 ② 출자금 규모 ③ 비농업인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 대상 유형별 농업법인을 지역 군집으로 무작위로 연락하여 면담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 면담자는 농업법인 대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법인 관리자 등 실제 운영 상황을 알고 의견 제시가 가능한 인원으로 요청하여 진행하였음.

□ 면담조사 대상 조직 현황

- 면담조사 목표를 200개소로 설정하고, 유형별로 순차 연락을 진행하였음.
- 설정한 유형에 따라 농업법인 조사 데이터가 충실한 9,667개 농업법인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1,469개소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방문 요청을 시행하였음.
 - 156개소가 면담조사를 승낙하였으나, 실제로는 중도 거절 및 부실한 응답 등으로 유의미한 조사결과는 121개소를 확보하였음.

[표 41] 유형별 농업법인 현장조사 실행 현황

구분	출자금 규모	비농업인 출자금비율				소계	
		0%	0~30%	30~60%	60% 이상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1억원 미만	6			6	
		1~5억원	7		1	8	
		5억원 이상	1			1	
	축산업	1억원 미만					
		1~5억원		1		1	
		5억원 이상					
	농축산물 가공업	1억원 미만	2			1	
		1~5억원	4		1	2	
		5억원 이상	2			2	
	농축산물 유통업	1억원 미만	4			1	
		1~5억원	5			2	
		5억원 이상	2			2	
	농업서비스업	1억원 미만					
		1~5억원					
		5억원 이상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1억원 미만	1			1	
		1~5억원		1		1	
		5억원 이상					
	기타사업	1억원 미만	1			1	
		1~5억원	2			1	
5억원 이상					1		
소계	1억원 미만	14			3		
	1~5억원	18	1	3	5		
	5억원 이상	5			4		
	소계	37	1	3	12		
영농조합법인	작물재배업	1억원 미만	8		1	10	
		1~5억원	8			8	
		5억원 이상		1			
	축산업	1억원 미만					
		1~5억원	3			3	
		5억원 이상					
	농축산물 가공업	1억원 미만	4			4	
		1~5억원	11			11	
		5억원 이상	1			1	
	농축산물 유통업	1억원 미만	7			7	
		1~5억원	4	1		1	
		5억원 이상	1			1	
	농업서비스업	1억원 미만					
		1~5억원	1			1	
		5억원 이상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1억원 미만	3			1	
		1~5억원	5	1		6	
		5억원 이상					
	기타사업	1억원 미만	1			1	
		1~5억원	3			3	
5억원 이상		1			1		
소계	1억원 미만	23		1	2		
	1~5억원	35	2		1		
	5억원 이상	4			4		
	소계	62	2	1	3		
합계			99	3	4	15	121

4.3. 현장조사 농업법인 특성

가. 기본현황

□ 지역 및 설립 연도별 분포

- 본 연구를 통해 시행한 121개소 농업법인의 지역별 분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광역시의 경우 대전광역시 포함) 26개 시군에 분포.
 - 법인격·유형과 출자액 특성을 고려하되 농업법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집중하여 군집된 대상을 확보하였음.

[표 42] 현장조사 농업법인의 시도별 분포

(단위 : 개소)

시·도	개소수			시·군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합계	
강원	2	13	15	춘천, 횡성, 정선
경기	13	5	18	고양, 광주, 김포, 포천
경남	3	9	12	밀양, 거제
경북	3	25	28	경산, 구미, 김천, 상주, 영천
대전	4	-	4	대덕구, 동구, 유성구
전남	12	2	14	나주, 무안, 화순
전북	1	-	1	정읍
충남	14	11	25	공주, 논산, 예산, 태안
충북	1	3	4	단양
합계	53	68	121	(26개 시군)

- 설립 연도별로 보면, 2000년 이전 1990년대에 설립된 법인은 9개소로 적으며, 2011~2015년에 설립된 법인이 56개소로 가장 많았음.
 - 2010년 이후 농업법인 개소수가 급증한 농업법인조사 통계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었음.

[표 43] 현장조사 농업법인의 설립연도별 분포

(단위 : 개소)

	2000년 이전	2001~ 2005년	2006~ 2010년	2011~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농업회사법인	2	5	9	29	8	53
영농조합법인	7	9	25	27	-	68
합계	9	14	34	56	8	121

나.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별 규모 특성

□ 농업법인 설립 목적에 따른 분류, 유형화

- 농업법인조사에서는 농업법인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해당 법인의 사업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법인설립 이유와 2021년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 농업 생산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전체 121개소 중 13개소 (10.7%)로 시설채소, 버섯, 화훼 등 시설형 농업법인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본 조사에서 축산생산법인체는 가축전염병 우려 등으로 인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음.
- 현장조사 결과 농산유통 21개소(17.4%), 농촌관광·휴양 21개소(17.4%)로 해당 법인이 많았으며, 뒤를 이어 농산가공과 곡물가공 사업 법인들이 많았음.
- 축산의 경우에는 조사료·사료 제조 및 유통이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축산물유통, 축산가공, 축산퇴비 등이 있었음.
- 농업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43개로 35%였으며, 농지를 소유한 경우 25개소,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는 20개소였음.
 - 농지소유와 임차를 모두 하고 있는 경우는 4곳이었음.
 - 농산물가공, 농촌관광·휴양사업의 부속 시설로서 농지를 보유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 등 본 연구의 현장조사에서는 농업법인이 융복합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농업법인 중에는 전문화된 단일사업에 집중하는 방식도 있으나, 농산물 생산 + 가공, 농축산물 가공 + 관광·휴양, 농자재 제조 + 기술지원 서비스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방식도 채용하고 있었음.

[표 44] 현장조사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별 분포

(단위 : 개소수)

목적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총 합계
농촌관광·휴양	3	18	21
농업	생산	7	13
	농산유통	9	21
	농산가공	7	16
	곡물가공	3	4
	도정	2	4
	종묘·묘목		4
	화훼생산유통	3	4
축산	축산퇴비	2	4
	축산유통	4	6
	곤충	1	3
	축산가공	4	4
	축산서비스		1
	조사료·사료	2	7
	분뇨처리		1
기타	식품유통	1	1
	농자재	2	3
	저장·창고	1	1
	자산관리	2	3
총 합계	53	68	121

주. 도정과 곡물가공을 구분하였으며, 곡물가공은 떡, 막걸리 제조 등임.

주. 축산유통에는 도축·계란도소매·식육점 등을 포함하며, 축산가공은 가공육제조 등 2차가공을 의미함.

□ 법인 목적, 유형 및 출자구조별 매출액 규모

○ 법인별 특성에 따른 농업법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특성에 따른 대표 지표인 매출액(2019년)의 구조를 파악하였음.

- 수치로 활용한 매출액은 농업법인조사 통계치를 현장조사에 일치성을 확인 하여 집계하였음.

○ 전체 121개 농업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15억2천만원이었음. 법인격별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이 21.6억원, 영농조합법인은 10.1억원으로 나타나 농업회사법인의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설립 목적별 평균매출액을 보면, “축산가공”이 79.2억원, 쌀·잡곡을 다루는 “도정” 사업 농업법인의 평균매출액이 56.2억원, “화훼생산유통”이 37.7억원, 조사료 및 사료 33.1억원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 세부 유형으로는 농업회사법인 조사료·사료 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도정 법인이 103.8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유형이었음.

[표 45] 현장조사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별 평균 매출액

(단위 : 백만원)

목적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총 합계	
농촌관광·휴양	145.7	68.9	79.9	
농업	생산	2,258.0	682.8	1,531.0
	농산유통	776.1	2,028.5	1,516.2
	농산가공	1,051.4	780.7	899.1
	곡물가공	642.7	253.0	545.3
	도정	860.5	10,383.5	5,622.0
	종묘·묘목		1,087.0	1,087.0
	화훼생산유통	3,768.0		3,768.0
축산	축산퇴비	3,100.5	160.0	1,630.3
	축산유통	1,945.3	219.0	1,369.8
	곤충	312.0	285.5	294.3
	축산가공	7,924.5		7,924.5
	축산서비스		143.0	143.0
	조사료·사료	10,375.5	482.4	3,309.0
	분뇨처리		706.0	706.0
기타	식품유통	1,278.0		1,278.0
	농자재	338.0	218.0	298.0
	저장·창고	389.0		389.0
	자산관리	20.5	11.0	17.3
전체	2,163.5	1,013.5	1,517.3	

- 반면, 농촌관광·휴양은 8천만원, 자산관리 1천7백만원 등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외에 농산가공(과·채 가공) 9억원, 곡물가공(누룽지, 떡, 떡갈리 등) 5.5억원 등으로 중소규모에 머물고 있음. 본격적인 식품제조업이 아니라 농업·농촌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농산물 가공 농업법인은 중·소규모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 농촌관광·휴양은 농촌마을개발에 따른 “마을법인” 이 주로 전개하고 있음.
 - 마을법인들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40~50농가 이상으로 많은 경향이 있음.
 - 반면, 출자자 수와 비교하여 매출액·수익 규모가 적은 경우들이기 때문에 조직의 지속성 확보와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도 있었음.
- 농업법인 출자액규모가 클 수록 매출액 규모가 커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출자액 규모가 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매출액 규모의 “점프(Jump)”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출자액(자본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전의 규모와 비교하여 매출액 규모가 수 배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됨.

[표 46] 현장조사 농업법인의 목적 × 출자액규모별 평균매출액 분포

(단위 : 개소수)

목적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1억원 미만	1~5억원	5억원 이상	소계	1억원 미만	1~5억원	5억원 이상	소계
농촌관광·휴양		197.0	161.0	79.0	145.7	74.6	59.9		68.9
농업	생산	337.7	2,260.0	5,136.5	2,258.0	798.0	410.5	882.0	682.8
	농산유통	814.0	745.8		776.1	787.4	3,476.5		2,028.5
	농산가공		993.8	1,397.0	1,051.4	93.3	663.2	3,430.0	780.7
	곡물가공	518.0	892.0		642.7			253.0	253.0
	도정	860.5			860.5		10,383.5		10,383.5
	종묘·묘목					975.0	170.0	3,033.0	1,087.0
	화훼생산유통	7,630.0	1,837.0		3,768.0				
축산	축산퇴비		3,100.5		3,100.5		160.0		160.0
	축산유통		1,945.3		1,945.3		219.0		219.0
	곤충	312.0			312.0		285.5		285.5
	축산가공	3,557.0	2,938.0	12,601.5	7,924.5				
	축산서비스					143.0			143.0
	조사료·사료	779.0		19,972.0	10,375.5		482.4		482.4
	분뇨처리						706.0		706.0
기타	식품유통			1,278.0	1,278.0				
	농자재		338.0		338.0		218.0		218.0
	저장·창고		389.0		389.0				
	자산관리	14.0		27.0	20.5		11.0		11.0
총 합계		1,147.9	1,367.6	6,469.9	2,163.5	389.4	1,347.3	1,899.5	1,013.5

[표 47] 현장조사 농업법인의 목적 × 비농업인출자비중별 평균매출액 분포

(단위 : 개소수)

목적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0%	0~30%	30~60%	60% 이상	소계	0%	0~30%	30~60%	60% 이상	소계
농촌관광·휴양		145.7				145.7	71.6			22.0	68.9
농업	생산	3,122.8			96.0	2,258.0	813.6			29.0	682.8
	농산유통	776.1				776.1	893.8	15,645.0			2,028.5
	농산가공	1,246.3		378.0	998.5	1,051.4	780.7				780.7
	곡물가공	642.7				642.7	253.0				253.0
	도정	860.5				860.5	10,383.5				10,383.5
	종묘·묘목						1,124.3		975.0		1,087.0
	화훼생산유통	3,499.0		175.0	7,630.0	3,768.0					
축산	축산퇴비	3,100.5				3,100.5	160.0				160.0
	축산유통		184.0	5.0	3,796.0	1,945.3	48.0			390.0	219.0
	근층	312.0				312.0	285.5				285.5
	축산가공	3,557.0			9,380.3	7,924.5					
	축산서비스						143.0				143.0
	조사료·사료	19,972.0			779.0	10,375.5	569.0	136.0			482.4
	분뇨처리						706.0				706.0
기타	식품유통	1,278.0				1,278.0					
	농자재	94.0			582.0	338.0	218.0				218.0
	저장·창고	389.0				389.0					
	자산관리	20.5				20.5	11.0				11.0
전체		1,811.2	184.0	186.0	3,909.4	2,163.5	834.3	7,890.5	975.0	147.0	1,013.5

- 비농업인 출자 비율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의미가 없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가 없는 경우와 60%를 초과하는 경우로 양극단에서 평균 매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화훼, 축산유통, 축산가공 등 비교적 규모화가 진전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가 없는 경우와 비농업인 출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법인들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크게 나타났음.
- 법인 목적 분야에 따라 농민자본, 비농민자본 각각이 집중·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 현장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적은 개소수로 파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 다만, 화훼, 축산가공·유통에서 비농업인 출자가 큰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매출액도 크게 나타나는 반면, 농산유통의 경우 영농조합 중 일정 비중으로 비농업인 출자가 있는 경우에 평균 매출액이 큰 특성을 나타냄.

□ (참고) 농업법인조사 기준 사업유형 분류에 따른 평균 매출액

- 본 연구의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조사 통계의 사업유형 대분류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였음.
 - 출자액 규모별 평균 매출액과 비농업인 출자 비중별 평균매출액을 분석하되 분류 기준을 농업법인조사의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사업유형은 농업, 축산 등 대분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2019년 통계에서는 별도로 품목·서비스 구분 항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화된 분석이 가능함.
- 출자액 규모별로는 5억원 이상 구간에서 평균 매출액이 큰 유형들이 있었음.
 - 농업회사법인에서는 농산물가공 유형의 평균매출액이 81.7억원, 농산물유통이 100.3억원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영농조합법인은 작물재배 유형의 평균매출액이 30.3억원, 농산물 가공이 34.3억원으로 나타남.
- 반면, 구간별 비농업인 출자비중과 관련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가 없는 경우와 60% 이상 초과하는 양 극단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농축산물가공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가 없는 경우 평균매출액이 23.1억원인 반면, 60% 이상인 경우 평균매출액이 51.1억원에 달하고 있음.
- 출자액 규모는 농업법인 유형별 공통적으로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비농업인 출자 비중의 경우에는 유형과 개별 법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음.

[표 48] 현장조사 법인, 유형, 출자액 규모별 평균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유형	출자액 규모			전체
		1억원 미만	1~5억원	5억원 이상	
농업 회사 법인	작물재배	451.0	1,156.9	45.5	753.3
	축산생산		5.0		5.0
	농축산물가공	833.3	1,309.0	8,174.0	3,168.5
	농축산물유통	2,736.2	2,387.9	10,025.5	3,603.4
	농업서비스				
	농촌관광휴양	197.0	184.0		190.5
	기타	215.5	534.0	5,391.0	1,237.3
	소계	1,147.9	1,367.6	6,469.9	2,163.5
영농 조합 법인	작물재배	410.2	351.0	3,033.0	523.3
	축산생산		70.7		70.7
	농축산물가공	58.5	2,211.8	3,430.0	1,749.6
	농축산물유통	769.7	3,528.5	882.0	1,960.1
	농업서비스		47.0		47.0
	농촌관광휴양	64.5	317.7		216.4
	기타	143.0	241.3	253.0	224.0
	소계	389.4	1,347.3	1,899.5	1,013.5
전체	689.3	1,355.7	5,063.6	1,517.3	

[표 49] 현장조사 법인, 유형, 비농업인출자비중 : 매출액 평균

(단위 : 백만원)

구분	유형	비농업인 출자 비중				총 합계
		0%	0~30%	30~60%	60% 이상	
농업 회사 법인	작물재배	843.8		175.0	64.0	753.3
	축산생산			5.0		5.0
	농축산물가공	2,306.9		378.0	5,105.2	3,168.5
	농축산물유통	3,202.3			5,074.0	3,603.4
	농업서비스					
	농촌관광휴양	197.0	184.0			190.5
	기타	441.0			2,033.7	1,237.3
	소계	1,811.2	184.0	186.0	3,909.4	2,163.5
영농 조합 법인	작물재배	525.8		975.0	29.0	523.3
	축산생산	70.7				70.7
	농축산물가공	1,749.6				1,749.6
	농축산물유통	950.5	15,645.0		390.0	1,960.1
	농업서비스	47.0				47.0
	농촌관광휴양	250.8	136.0		22.0	216.4
	기타	224.0				224.0
	소계	834.3	7,890.5	975.0	147.0	1,013.5
전체	1,199.4	5,321.7	383.3	3,156.9	1,517.3	

4.4. 현장조사 우수 사례

가. 농업생산 및 지원 체계 확립과 신사업 도전

- (충남 논산) 농업회사법인 느티나무 유한회사 : 귀농인의 도전
 - 2015년에 부부가 귀농하여 무농약 딸기 하우스를 하고 있음.
 - 귀농 당시부터 하우스를 설치할 때 법인으로 출발. 법인 소유 농지는 1,940평 규모로 고설·연동 하우스 4개동과 저온저장고를 구축하였음.
 - 당초 귀농하기 이전에 비농업인으로서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으나, 법인 경영을 대표가 직접 맡으면서 경영체제가 바뀐 것임.
 - 대표가 봉직하던 IT회사가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에 참여하고 있음.
 - 초기에 판로가 없어 고생하였으나, 직거래·온라인 매출을 확대하면서 충분한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 참고로 내부 경영관리도 충실하게 진행하여 신규 법인이지만, 농업경영체 갱신제도를 인지하여 대응.
 - 다만, 금번 갱신 당시에 정관에 규정한 업종 중 농업법인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있어 경영체 등록이 안 된다는 점검 결과를 받았음. 등기변경을 진행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갱신을 시행하였음.

[그림 13] 충청남도 논산 농업회사법인 느티나무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 (경북 구미) 도개수박공동육묘영농조합법인 : 공동육묘 사업

- 도개수박공동육묘영농조합법인은 법인 설립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할 뿐 아니라 이에 적합한 출자주 구성과 운영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농업법인 제도 초창기인 1995년 설립(실제 1994.11)하였으며, 지역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참여하여 출자자를 구성하였음.
 - 고령화, 공단으로의 청장년 인력 유출로 인력부족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농업인력 경감을 위한 공동육묘사업의 중요성을 사전에 인식한 결과임.
- 사전 주문방식으로 육묘 후 공급하며, 육묘업에 필수적인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 2010~2016년간 매년 4억원 이상의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여 왔으나, 이후 매출규모가 2.5억원 규모로 감소하였음.
 - 품목전환·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시설하우스 농가가 감소하고 육묘장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그림 14] 경상북도 구미 도개수박공동육묘영농조합법인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 (경북 상주) 천연영농조합법인 : 지역 친환경농업의 중심 역할

- 상주시는 친환경농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및 친환경농업을 다양한 품목에서 진행하고 있음.
 - 타 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 단지화가 어려운 포도, 배, 꽃감 등 과수를 비롯하여 인삼까지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인 단체, 친환경인증 기관, 로컬푸드 조직, 귀농·귀촌인 등 다각화된 지역 단체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천연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11명의 친환경농업인이 출자하여 구성하였으며, 농가 단위에서 직접 제조하기 어려운 친환경농업 투입재를 직접 생산하여 보급하기 위하여법인을 구성하게 되었음.
- 친환경농가들은 자가제조한 천연방제재를 활용하여 왔으나 원재료 구입, 고령화로 인한 작업관리 곤란 등으로 투입재 생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음.
- 출자자는 친환경농업 단지별 대표자로 구성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연합회 회원 조직으로 구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지역 친환경농업인 수요가 큰 유황합제 등을 집중생산하여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방제 등 자문·지도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2019년 2억2천만원 등 매출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부터는 상주시와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통합 지원을 시행하면서 동 법인이 주요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조직 활동 기반으로서 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림 15] 경북 상주 천연영농조합법인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 (경북 경산) 두런두런영농조합법인 : 로컬푸드 유통 및 농작업 지원
- 두런두런영농조합법인은 2012년에 설립된 마을 법인임.
 - 설립 이전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면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법인 마을 공동사업으로서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였음.
- 마을 주민, 농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유통,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인력 지원을 법인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음.

- 마을 농업생산 주품목은 쌈채소, 연근, 포도, 대추 등으로 복합적임.
- 학교급식 등 로컬푸드 지역내 유통을 목적으로 다품목 생산, 지역내 유통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사업의 법인 매출규모는 8억원임.
- 법인은 출자자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출자자 이외에 학교급식, 로컬푸드에 출하는 마을 농가들의 생산물을 판매·취급하고 있음.
- 법인의 주요 장비는 “화물차” 라고 할 수 있음.
 - 법인 직원으로 배송기사를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마을 농산물의 로컬푸드 유통이 법인 사업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 농작업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 농업노동자와 연간계약으로 고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법인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농작업 인력 운용은 어려움이 있음.
 - 대표자의 책임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들의 농작업 인력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축산분야 신사업화와 생산지원 체계 구축

□ (경남 밀양) 주식회사 살림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 도전

- (주)살림 농업회사법인은 2010년 설립되었음.
 - 대표는 화분매개곤충 회사에 종사하여 곤충관련 전문성을 확보하여 왔으나, 업체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음.
- 설립 당시 출자자 4명(비농업인 3명)이었으나 현재는 출자자 3명 전원이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출자자 변동은 없으나, 출자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농업인이 되었음.
- 화분매개곤충(뒤영벌_유럽호박벌)을 생산하여 시설채소(과채류) 전국 농가에 공급하고 있음.
 - 농가 직접 판매, 농자재/농약 판매점을 대리점화, 지역농협 ODM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확보하고 있음.
- 설립 초기(2010년초) 25백만원 매출에서 출발하여 2016년 이후 350백만원 수준으로 성장하였음.

- 시설과채류의 수정 방법은 호르몬 또는 매개곤충(벌 등) 활용이 필요함. 호르몬 활용 시 농약 사용량이 증대하나, 매개곤충 활용 시 농약 사용량 감소, 안전농산물 생산·소비 확대에 유리함.
-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2021년말 동충하초쌀 상품을 등록하였으며, 사업초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역 어르신 고용 등 지역사회 기여에도 노력하였음.
- 2021년에 법인을 농업경영체 등록하면서 미등록 시기에 대한 세금감면 분에 대해 추정·가산세를 납부.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충분한 안내/지도에 대한 아쉬움을 애로 사항으로 제시하였음.

□ (경기 광주) 광주한우영농조합 : 광주한우협회의 공동사업장

- 광주한우영농조합법인은 광주시 한우협회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지역 한우농가인 출자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표는 협회 회장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05년 설립되어 15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면서 안정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TMR 사료 제조, 판매가 주요 목적임.
- 사료공장 건립 당시에 배합기 등 시설 지원이 있었으며, 운영과 관련해서도 원료구매비 용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그림 16] 경기도 광주한우영농조합

TMR 공장 내부	제조품	공장 전경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 축산사업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 환경, 안전 등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밀하게 협의·협조하고 있음.
- 축산시설로서 주변 환경 등에 민감.
- 공업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가와는 격리된 공간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민원 등 문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였음.

- 지역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한우농가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장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있음.
 - 매년 7~8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여 법인·시설 운영의 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있음.
 - 하지만, 한우 농가가 계속 감소하여 회원 농가 사료 수요만으로는 매출 안정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임.
- 농가 지원, 경영비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직영판매장과 축산서비스 등 회원과 경합이 있는 수익 부분 진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구조임.

□ (전남 나주) 안심목장영농조합법인 : 공동구매공급, 사료비 절감

- 대표자는 2000두 이상 대규모 한우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지역 한우농가들과 함께 TMR 제조와 프리믹스 공동구매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사료 전문 법인을 구성하였음.
- 2020년 159억원, 2021년 176억원 등 지역 한우산업의 발전과 함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공장은 기존 조사료 공장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사료공장 증설을 위하여 토지를 추가 매입하였음.
- 축산사업은 대군 사육농가와 협력, 규모의 경제로 원가절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음.

[그림 17] 전라남도 나주 안심목장영농조합법인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 (경남 밀양)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 : 중소농가의 공동가축분뇨 처리

- 양돈농장의 규모화를 넘어 대규모 계열 체제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축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양돈산업에서 분뇨처리 문제는 경영 지속의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 요소가 되고 있음.
-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은 중규모 양돈농가간 연대·협역으로 자구적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모델로 구성하였음.
- 2007년에 설립하였으며, 대규모 농가는 개별 시설 운영, 소규모 농가는 지자체 처리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7인의 중규모 양돈농가가 자체 분뇨처리 법인을 설립하였음.
 - 초기 단계에 축산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의 반대·민원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 법인 직원은 출자자가 아닌 별도 직원(7~8명)으로 구성. 매출액은 매년 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은 참여하고 있는 양돈 농가의 분뇨처리 비용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경영체로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 분뇨처리를 통해 생산된 액비는 지역 농가들에게 무료로 살포(+법인 소유 농지 배포)하고 있음.

다. 농산물 가공과 융복합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충남 예산)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 주식회사 : 주산지 가공융복합

-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 주식회사는 설립 초기 생산자 40명이 출자한 공동사업체였으나 현재는 가족 중심 5명(농업인4, 비농업인1) 출자자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당초 사과와인 법인은 제1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산물인 사과 가공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것이었음.
- 가공사업의 특성상 원물 구매와 제조과정 관리, 최종 판매단계의 품질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경영을 위하여 단일한 경영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음.
 - 가공·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별도로 사과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체험과 축제 공간으로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음.

- 와인 주류 상품화 뿐 아니라 가공 및 체험 사업을 통해 매출, 일자리, 체험객수(외국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가공과 함께 농촌관광·휴양 사업을 결합하는 복합모델을 지향.
 - 6차산업 우수사례, 찾아가는 양조장 지정, 신지식 농업인 등 선정, 농가의 하품 사과를 매입·가공하여 통한 소득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사과와인을 출시한 이후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매출액 규모는 초기 1.5억원 규모에서 현재는 8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음.

[그림 18] 충남예산 예산사과와인(주)



자료 : 언론보도자료

- (전남 화순) 농업회사법인 (주)영글어농장 : 블루베리 생산·가공 융합
 - 귀농인으로 화순군 친환경블루베리의 중심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분말·액 등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부가가치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음.
 - 이마트, 트레이더스, 광주신세계 등 대형유통업체 판로를 확보. 대표자의 투자 이외에 외부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음.
 - 개인과 투자사 등의 투자로 농업법인 성장을 위한 자본력을 확충하였으며, 자본금 규모가 31억원에 이르고 있음.
 - 블루베리 생산방식을 화분에서 포트, 비가림 재배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임.
 - 기존 소규모 하우스 기반의 블루베리 생산방식을 재편하여, 비가림 및 방충·방조망 방식으로 인프라를 재구축하여 비용·효율성 증대.
 - 또한, 과원 무제초제 농법을 시행하여 무농약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에 도전하고 있음.
 - 친환경인증 원료를 바탕으로 동결건조 상품화로 블루베리에 특화된 발전 전략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림 19] 전라남도 화순 (주)영글어농장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라. 농업생산과 농촌관광·휴양사업 융복합화

- (충남 공주) 농업회사법인 청신목장주식회사 : 낙농 체험·관광 목장
 - 청신목장주식회사는 2013년 설립한 목장형 낙농 가공 및 체험장임.
 - 체험·관광 농장으로서 사업의 기반은 젖소 사육에 있음. 대표자가 속한 농가의 목장에서 젖소 7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착유소는 30두 규모임.
 - 2013년 설립 당시에는 일반 주식회사였으나 2018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출자자는 3인으로 모두 가족으로 구성하고 있음.
 - 생산 목장에서 가공, 체험형 목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음.
 - 축산 생산과 가공·체험 법인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장·가공장 부지 및 시설이 법인 소유로 되어 있음.
 - 목장 체험은 치즈 공방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연간 2억원 내외의 매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21년 코로나 시기에는 치즈 제조품을 생산, 판매하여 매출을 유지하였음. 최근에도 치즈 생산시설에 대한 보완 투자를 진행함.
 - 체험 이외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대상으로 치즈·유제품 등 가공제품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로컬푸드 매장이 확대되고, 지역산 유가공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반응이 증가하여 목장형 가공·판매사업의 확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림 20] 충청남도 공주 농업회사법인 청신목장주식회사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 (충남 논산) 청유리원영농조합법인

- 2010년 은퇴후 남매 3가족이 합심하여 농업법인을 구성하여 귀농·귀촌하였음.
 - 가족법인으로 모든 자산을 법인 소유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반 축적을 위해 본인 노력 인건비를 제외하고 배당 없이 재투자를 지속하여 왔음.
 - 설립당시 출자액은 12억5천만원으로 비교적 투자액이 컸으며, 농지 4,350평을 확보하고 다육·선인장 생산, 전시 시설 등을 건립하였음.
- 다육식물·선인장에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으며, 국내에서 드물게 선인장·다육 식물 종자를 생산하여 재배하는 기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 학생들 체험을 주로 하여왔으며, 코로나19시기에는 개인단위 소규모 방문객과 선인장·다육 도매사업을 전개하여 매출 규모를 유지하였음.
 - 치유농업 분야로 확장하여 도전하고 있음.

[그림 21] 충청남도 논산 청유리원영농조합법인 청신목장주식회사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 선인장·다육식물 생산자의 특성이 되는 생산·판매와 체험·관광·휴양을 융·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체계를 갖추고 있음.
 - 복합 사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
 - 전시장 내 카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관련한 음식료업 허가 및 등록, 부가가치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별도 사업자등록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화는 포기하고, 무료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는 등 복합 영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마. 마을·공동체의 공동·융복합 사업 활성화

- (강원 횡성) 태기산채영농조합법인 : 마을공동체의 농촌관광·휴양사업
 - 강원도 횡성군 삽교리 마을공동체의 법인이며, 당초 농촌체험마을·관광휴양마을로 지원을 받으면서 마을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음.
 - 설립 초기 마을주민 전체인 17농가 25명이 참여. 현재 마을 가구수가 증가하였으나 17농가의 출자자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민박·체험과 휴게공간 등 이색적인 공간으로 도시 청년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음. 특히, 휴게공간은 기존 퇴비사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마을소유였던 농지 1,500평을 법인이 이전 받아서 소유하고 있으며, 체험·숙박객에게 제공하는 식재료와 방문객 판매용으로 활용. 추가로 6,000평을 임차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 안정적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기금 적립과 출자 농가에 대한 배당도 매년 실시하고 있음.
 - 마을 전체의 공유시설로서 회의실·산책로·휴게공간을 이용.
 - 다만, 귀농·귀촌인 등 새로 이주한 주민과의 관계는 상호 이해하에 엄격하게 구분하여 상호간의 갈등 요소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림 22] 강원도 태기산채영농조합법인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 (경기 포천) 장독대마을영농조합법인 : 마을복합사업 경영체

- 마을 주민들이 출자자이자 노동자인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체험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장독대마을 영농조합법인의 1인당 출자금은 21만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출자금 한도는 마을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임.
- 당기순이익 시현시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노인·학생 장학금, 마을행사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균등출자, 공동작업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조합원(마을주민)들의 노동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임.
- 마을 주민들은 마을법인 조합원으로서, 공동작업(노동)에도 참여함은 물론 의사결정 구조에도 적극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부서별 일지, 월말 결산 기록, 총회 회의록 등 기록 관리·유지에 철저. 구성원간 분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마을 실정에 맞게끔 적정한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 텃밭이 딸린 체류형 펜션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였으며, 누에 및 장류 관련 체험활동 등을 꾸준히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외에 인터넷 판매, 직거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꽃감, 장류, 누에 등을 판매하여 코로나 이후 감소한 관광객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보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4.5. 현장조사 문제 사례¹²⁾

가. 마을공동체 법인의 내부 갈등 및 불철저한 운영

□ ■△ 영농조합법인 : 마을사업에서 개인사업으로

- 1990년대에 설립된 오래된 법인으로 지자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마을 주민 7×명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였으나 무산되면서 법인 활동이 약화됨.
 - 마을에 ○○○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사업을 진행하여 명맥을 유지 중임.
- 4번의 대표 교체가 있었으며, 200X년 현재 대표가 법인을 인수하였으며, 조합원을 1□명으로 축소하였음.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참여자들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자산이 매각 되면 관련 수익의 분배를 기대하는 상황임.
 - 현재 ○○○에서 매년 ○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며, 기존 채무 관련한 대출이자 상환에 전액 충당하는 상황임.
 - 고령 사망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등 적시에 필요한 법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 △△영농조합법인 : 마을경작, 간척지 임차 운용 방식

-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체험, 농산물 판매)과 정보화마을사업 사업도 수혜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출자자는 마을 주민(농업인) 7▲명 전체로서 관행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서류상 등재되어 있는 인원은 가구별 대표자 및 임원 등 2■명으로 불일치한 상황임.
 - 마을주민은 법인에 실제로 출자한 것은 아니며, 마을 소유 농지를 법인 소유로 전환한 것으로 출자를 대체하였음.
- 고령화된 마을 구조로 인해 공동 경작을 실행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별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음.

12) 문제 사례 및 현장 애로의 경우 본 연구 현장조사에 파악한 사례들이며 지역, 법인명, 주요 수치 등을 밝히지 않음. 본 항목의 목적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제적 상황과 법인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있음.

- 마을에서 간척지 □구획을 확보·운영하고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시설장비 확보를 위해 각각 별도로 법인 □개를 설립하였음.
 - 지원받은 시설장비는 개인이 보관 및 사용하며, 타인이 사용할 시 임대료 (현금)를 받아 마을회에 납부하고 있음.
-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설립·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참고] 마을 공동체 법인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 격화 문제

- 마을 공동체가 설립한 법인들은 “수익원”을 둔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음. 본 연구 현장조사에서도 마을법인들의 공동체내 갈등 사례를 다수 파악하였음.
- 대표자·임원 교체 등 특수 시기에 공동체의 단합으로 단일한 의견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수익권을 두고 마을내 갈등이 심화 되기도 함.
-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마을주민 전원이 농업법인에 출자하지만, 사업 기간이 종료되거나 운영이 미진해지면 여러 갈등이 발생. 여기에 관행적으로 마을법인이 개인화되어 매각 되는 등 문제적 상황이 전개되기도 함.
- 마을법인은 결국 “공유자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농촌마을 개발 등으로 투여된 공공시설 관리·수익의 문제와도 결합 되어 있음.
- 마을 공동체가 발전시켜온 공유자원과 마을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공적인 농촌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농촌마을 활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 농업법인의 운영·관리 모델을 체계화하고 규정·제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나. 출자자의 형식적 구성과 개인농가 혼합 경영

□ 출자자의 형식적 구성

- 농업법인은 참여·출자자 구성과 내부 조직 체계를 갖추어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을 추구해야 함.
- 현실에서 농업법인은 거시적인 경제여건 변화와 농산물 시장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영과 참여·출자자의 책임있는 활동이 필요.
 - 농업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개별 농가경영을 보완하거나 법인의 사업 자체의 성장을 통해 참여·출자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야 함.

- 하지만, 현장 사례들을 보면, 실질적인 농업법인 사업 참여·경영보다는 법인 설립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출자자를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런 경우 농법법인 참여·출자자의 책임성이 약하고, 정상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 운영관리와 지속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례)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사업으로 농산물 선별장을 건립, 지역 및 광역의 농산물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임.
 - 대표자가 기존 법인을 인수하였으며, 영농조합 출자자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명의 참여자임.
 - 시장 여건이 좋아 큰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나, 이에 따른 배당 등 통상적인 수익 배분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출자자 구성이 법인 운영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총회와 배당 등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임.
 - 연대보증제가 있을 당시, 운영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무한책임”인 법인 임원 전원의 동의와 보증처리가 필요하였고, 번거로운 행정처리 등 어려움이 있었음. 출자자들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 받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 현재는 고질적인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 이후 농업법인 조합원이 “유한책임제”로 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책임하에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 개인농가 경영과 법인경영의 혼합 운영

- 현장조사에서 농업법인과 개인농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사례들을 다수 파악하였음.
 - 법인과 농가경영이 혼합되는 경우 사업체로서 법인 경영·관리가 불확실하게 되고 사업규모·전문성과 무관하게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게 됨.
 - 또한, 농업법인이 농가 단위의 인적인 경영 승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상속, 경영이양 등)를 완화하는 도구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농가 내 세대별로 법인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자산관리 측면에 치우친 법인 운영 방식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외에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현장조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농업생산법인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상황이었음.

- 법인 운영 측면에서는 개인 및 참여농업인이 경영하는 농지와 법인 소유·경작 농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농작업의 범위·단계, 실질적인 생산농산물의 취급액 등이 불확실하게 집계되고 있는 상황임.
 -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와 경작실적은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형 직접지불 지급 등 농정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사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개의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199×년에 설립되어 부친이 대표자로 있으며, 정책지원으로 선별장을 건립·운영하여 왔음. 대표를 포함 구성원들이 고령화되면서 실질적인 법인 활동은 중단된 상황임.
 - ◆◆농업회사법인은 후대의 가족이 설립하였고, 해당 ●■영농조합법인 시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판매·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사례) ■●영농조합법인은 2014년 설립되었으며 출자자 5인 모두를 가족으로 구성하였음.
- 20××년까지 생산물 판매와 체험을 구분 운영하였으나, 관리 편의를 위해 사업부 구분을 없애면서 농업법인의 매출에 과세, 비과세가 혼합되어 있음.
 - 법인 소유 농지, 시설은 없으며, 개인(대표 등)의 건물, 토지를 법인이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 농업법인 관리 문제 및 현장 애로 사항

□ 지자체 부서간, 농관원 삼중(三重) 관리

- 농업법인의 관리·감독 기능이 시·군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음.
- 최근 지자체의 규제·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농업법인도 행정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규제·모니터링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특별한 접촉이 없었으나 최근 농업법인 방문·점검, 경영자료 제출 요구, 농업경영체 갱신시 비대상 업종 삭제와 변경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음.
- 지자체-농업법인 관리, 지자체-개별사업 지원, 농관원-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농업법인의 감독 창구가 분리되어 있어 농업법인 경영체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이 있음.

- 부서간 일치된 의견과 접근이 아닌 각기 소속, 지침 등을 따라 규제·모니터링이 진행되는 경우 정책·제도 접근의 어려움이 발생.
- 정책사업 부서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고 지원사업 관련 실적제고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 반면, 농업법인 점검·관리 담당 부서의 입장과 상충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정책에 대한 접근 창구간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 (사례) ▲□영농조합법인은 농촌관광·휴양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이 소유·임차한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 농업생산은 생산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농업체험 요소로 활용하고, 생산물은 방문객의 식재료 및 현장 판매용으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갱신을 하면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제외하여야만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포기하였음.
 - 농업경영체 등록 단계에서는 정관의 목적과 사업자 등록증을 교차하여 점검함. 정관 사업인 “체험사업”, 사업자등록에 표시된 “관광” “숙박” 업종 등으로 인해 경영체 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파악됨.
 - 농업경영체 등록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동 법인은 소유·임차 농지 경영에 따른 직불금을 수급(受給)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 [참고] 농업법인의 경영체 등록 관련

-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은 조세감면, 정책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법인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2017~2019년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상황은 통계조사의 활동법인수와 비교할 때 51~56% 내외로 낮은 상황에 있음. 농업법인 통계, 관리의 근거로 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법인 실태조사 등 행정적 노력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임.
- 현장조사에서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등록·갱신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음.
- 농지를 소유·임차 경작하여 직접지불 대상이 되거나, 정부·지자체 농업·농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갱신 사항을 철저히 관리.
- 다만,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기간이 지났거나 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음.
- 한편,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산림청 소관으로 별도로 진행되고, 2022년부터 임업·산림 공익직불제가 시행됨. 기존 임산물·임업 관련 농업법인의 경우 산림청의 경영체 등록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혼란이 있음.

[표 50] <참고>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추정)

(단위 : 개소, %)

구분		2017	2018	2019
농업법인 조사	전체	20,200	21,780	23,315
	농업회사법인	7,920	11,617	13,085
	영농조합법인	12,280	10,163	10,230
농업 경영체 등록	전체	10,420	11,600	12,980
	농업회사법인	4,304	5,054	6,083
	영농조합법인	6,116	6,546	6,897
비율	전체	51.58	53.26	55.67
	농업회사법인	54.34	43.51	46.49
	영농조합법인	49.80	64.41	67.42

주 : 농업경영체등록 현황은 각 연도말 기준 농업법인의 경영체 등록 수치를 집계한 것이며, 모수가 비교 대상인 농업법인조사 활동법인 통계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각 연도말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현황(agrix.go.kr) 자료를 추출하여 연구진이 분석하였음.

□ 농업법인 세무 처리, 내부관리의 취약성

-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는 타 법인격과 비교하여 유리한 특례·감면이 부여되고 있으나, 조세특례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 여파로 계속하여 개편이 진행되고 있음.
 - 세금 면제·감면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적용 대상과 적용 기간을 엄격하게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조세특례 사항이 규정되고 있음.
 - 여기에 2015년 농업경영체등록을 조세 감면의 요건으로 하는 등 주요한 변화도 있었음.
- 농업법인은 대부분 세무사·회계사에게 법인 회계·세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신고 누락, 계산 오류, 경영체등록 요건 미충족 등 다양한 사유로 사후 추정,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사례) ●▲영농조합법인은 2017~18년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음.
 - 감면 받은 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인지되어 3년 지난 시점에서 감면세액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었음.

- 세무사에게 회계와 신고를 맡기고 있는 바, 법인에서는 문제없이 신고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음.
- 이외에 최근 농업법인 관련 등기, 세무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놓치고 있었던 행정 처리로 인한 과태료, 세금부과 사례들도 있었음.
 - 법인 변경, 임원변동 등 등기 사항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 보유한 복합건물(판매시설과 결합된 상가주택 해당)과 체험용 숙박시설에 고액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 농업법인, 조세 제도 변화에 대해 법인 관리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한 회계, 세무에 대한 기초 역량의 확충이 필요함.

□ 농업법인 종사자의 농업인 인정 문제

- 농업법인 출자·임원이면서 상근 인력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 경력을 농업인 경영체 등록 요건, 농업인확인서 발급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농업법인에 1년 이상 생산·출하유통·가공·수출 사업에 “고용”된 사람은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이 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호,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 문제는 농업법인 출자자·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종사하였으나 “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됨.
- (사례) ●◎육묘 농업법인에 출자자·이사로 참여하여 10년간 상근하였음.
 - 법인을 퇴사하면서 독립경영·귀농을 희망하여 농지 매입을 추진하였음.
 - 육묘장이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있고, 농업 활동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농업법인의 고용인이 아닌 상근출자자로 인식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
 - 신규농과 동일하게 추가적으로 90일 이상의 농업종사 일수 등 요건을 확보하여야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상황임.

5. 시사점 및 결론

5. 시사점 및 결론

5.1. 분석·조사 결과 요약

가. 농업법인 제도 및 통계 자료 분석 결과

□ 농업법인 제도의 의의

- 농업법인 체제는 전통적인 농업경영체제인 “농가”의 확장으로서, 조직력을 갖추어 규모 확대, 전문화 및 연관 부문의 융복합을 추진하는 것임.
- 현대의 시장 여건에 대한 농업경영체의 적응을 “법인” 경영을 통해 보완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으며, 결국 농가, 농업법인으로 구성되는 농업구조의 재편성과도 관련이 있음.
- 국가마다 농업법인의 정의, 요건과 정책 전략에는 차이가 있으나, 농업법인 체제가 전통적인 농업생산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농가의 법인화(GAEC)와 농가와 외부자본을 결합한 융복합 영역 확대(EARL)로 법인체계를 구성. 농지소유가 자유로운 법제 특성을 배경으로 농업경영과 가계의 분리, 농업경영 승계, 소규모 관련다각화 등 농산업 활동에 초점을 둔 농업법인체제를 갖추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농법법인으로 특정한 법제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2008~2009년 조세측면에서 농관련 사업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면서 농업법인 특성이 확보되었음.
 - 일본은 일반 회사와 구별되는 농업법인격을 규정하는 농사조합법인과 농지법에 의한 농지소유적격법인으로 농업법인 체제가 마련되어 있음. 특히, 농지소유적격법인 제도는 농사조합법인 이외에 회사법인도 자격·요건을 갖추어 농지소유가 가능하게 한 특징이 있음. 기업의 농업참여를 개방·활성화하는 농·상·공(農·商·工) 연계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을 두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법인격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강고한 농가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농업법인은 시설·축산 중심의 생산법인과 함께 농축산물유통·가공과 체험·휴양 등 다각화된 연관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농업법인 제도의 변화 : 1990~2021년

-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창설되었음.
- 1993/94년 법 개정으로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고, 농업법인의 사업법위와 출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농업법인의 틀을 확보하였음.
 - 농업법인이 농업생산과 함께 유통·가공·서비스 등 다각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확대.
 - 농지법 제정과 맞물리면서 농민조합원 중심의 영농조합법인과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을 정하는 등 현재의 틀이 규정되었음.
- 이후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2009년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가 변경, 체계화되었음.
- 역사적인 제도의 변화를 보면 법인화된 농업경영의 규모화·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농업법인 제도는 완화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비농업인) 도입,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가 진행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도 농업인의 의결권 비중, 대표자·임원요건 등이 풀리면서 계속 완화되었음.
-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법인 제도는 경제 여건과 농정 체제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 처해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 2017년 이후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완화적 금융·재정정책이 시행되면서 농지를 둔 사회적 문제가 발생.
 - 2020년부터 공익형 직접지불이 시행되면서 농지·농업경영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졌음. 농업경영체로서 농민·농가와 농업법인의 위상과 구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음.
- 한편, 2021년에는 농지소유가 가능한 농업법인의 문제적 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규제 관점의 제도 개선이 급박하게 진행되었음.
 - 농지소유가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주식회사 전환에 제한이 없는 제도적 틈새를 활용한 농지투기의 문제 사례들이 등장.
 - 농업법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농업법인의 설립·변경 신고와 지자체의 관리 의무 부여, 농지 소유 관련한 규제가 강화됨.

□ 농업법인의 거시적 변화, 통계자료

- 농업법인 중 활동법인의 수는 2001년 3,146개소였으며, 2019년에는 23,315개소로 7.4배가 증가하였음. (통계포털, kosis.kr)
 - 2001년 : 영농조합법인 2,348개소, 농업회사법인 766개소
 - 2019년 : 영농조합법인 10,230개소, 농업회사법인 13,085개소
- 특히, 2010년 이후 농업법인 개소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개소수 증가와 매출 규모 확대는 농업회사법인에서 주로 이루어졌음.
 - 법인격별로 매출액 총합계액은 영농조합법인이 2010년 8조6천7백9십억원 → 2019년 11조5천8백9십억원으로 1.3배 증가하였으나, 농업회사법인은 같은 기간 4조1천9백3십억원 → 28조5천40억원으로 6.8배 증가하였음.
 - 또한, 개소수에 있어서도 2018년을 기점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수가 영농조합법인을 추월하였음.
- 농업경영체법의 제정으로 농업법인의 위상이 명확해지고, 출자자 구성과 조세 감면 사항 등이 체계화된 것과 관련이 있음.
 - 이외에 농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조직경영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

-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한 변화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시행하였음.
 - 분석의 기본 모델은 DID(이중차분분석) 모델을 활용하였음. 제도 변화가 일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4년 이상의 시계열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간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09년 비농업인의 출자금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으며, 비농업인 출자액 비중별 법인의 매출액 변화를 검증하였음.
 - 제도 변화의 기점은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확대한 2009/10년(75% → 90%)으로 설정하였음.
 - 제도 수혜집단은 비농업인 출자액 비중이 75% 이상이 집단과 미만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평균매출액 변화 격차를 확인하였음.
 - 분석결과 2009/10년에 비농업인 출자비중이 75% 이상, 미만인 두 집단간의 평균매출액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4년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법인세 감면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변화 효과를 파악하여 보았음.
 - 농업법인 조사 통계의 유형으로 작물재배업과 축산, 유통·가공·농촌관광휴양 등 이외의 유형으로 2분류하여 각 집단의 2014/15년 전후의 매출액 변화를 검증하였음.
 - 동일한 DID(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 결과를 종합하면, 정책·제도 변화가 결국 농업법인의 구성,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존 완화적 정책으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매출 확대 등 일정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나. 농업법인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의 의미와 추진

- 본 연구에서는 제도, 통계 자료의 분석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선 현장의 농업법인 경영체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면담조사를 시행하였음.
 - 농업법인의 법인격, 출자규모, 비농업인 출자액 비중을 핵심 구분요소로 하고, 생산-유통-가공-농촌휴양 등 법인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현실의 다양한 경영체 특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에 응한 총121개소의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53개소, 영농조합법인 68개소)의 조사결과를 집계하였음.
 -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으로는 농축산물 유통, 가공과 농촌관광휴양 등 농업 생산과 융복합된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장조사 추진 결과

- 활성화된 농업법인은 농가 수준의 규모를 넘어서서 규모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신제품·신사업으로의 확장에 유효한 경영체제로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법인유형별, 사업목적별, 매출액의 특성을 보면, 축산물가공, 곡물도정, 화훼 생산유통, 조사료·사료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들의 매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목적에 따라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차별적으로 구성하며, 사업 내용에서의 차별성보다는 공동체(마을 등) 중심의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을 택하는 등 구조·구성원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이외에 우수한 운영사례, 문제적 운영사례들을 파악하였음.
 - 우수 사례들을 보면, 농업법인을 통해 시설·축산 등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귀농귀촌 신세대의 농업분야 도전에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음을 확인. 또한, 가공·유통 등 농업생산과 결합한 다각화와 신품목·신사업으로 도전하는 혁신 추진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점을 살펴 보았음.
 - 문제적 운영사례들을 보면, 농업법인의 목적 설정이 농업경영 이외의 것인 경우, 특별한 투자 없이 소규모 경영을 지속하는 경우, 출자자를 형식적으로 구성한 경우, 농가와 농업법인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등을 파악하였음.
- 농업법인 운영·제도상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비생산 부문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어려움, 조세 관련 제도 등 지속적인 개편과 현장 경영체의 대응력 부족 상황도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음.
 -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은 조세,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뿐 아니라, 농업경영체로서 농업법인의 체계적 관리와 기초 정보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는 과제로 이해되었음.

5.2. 분석 결과의 이해 및 시사점

가. 농업법인 제도, 운영 시스템의 동인(動因)

- 농업법인 제도·통계 및 현장분석을 통한 이해
- 본 분석·조사는 여건,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농업경영 체제로서 농업법인 체제의 가능성과 문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었음.
 - 농업법인은 농가 경영체제를 보완, 혹은 극복하는 농업경영체제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에서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특히, 본 자료의 분석, 조사는 제도·통계 자료를 통해 농업법인의 거시적인 변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현장 사례를 통하여 농업경영체 내부의 미시적인 변화와 운영 원리를 파악하였음.
- 농업은 농업생산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각화된 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로 농업법인 경영체제가 작동하여 온 점을 파악하였음.
- 농업법인의 변화를 촉발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농업법인 제도 개선과 농업 주체들의 법인화 전략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함.

□ 농업법인 체제의 3대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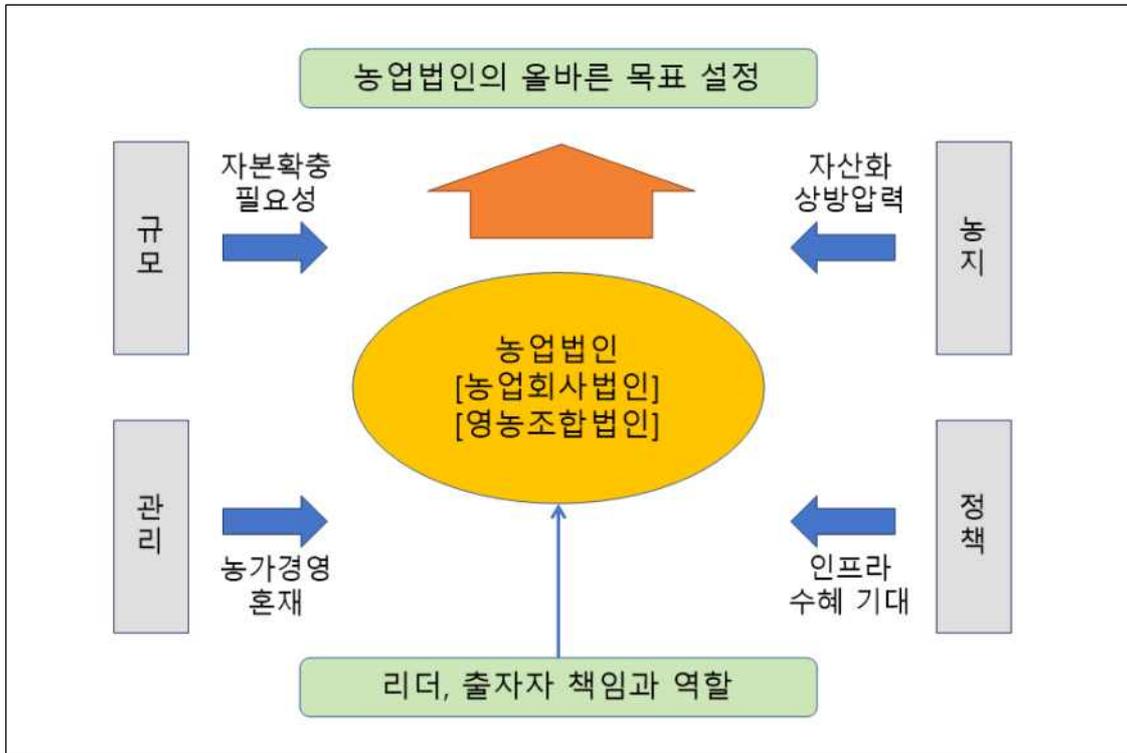
- 농업법인 체제는 경제여건, 정책·제도, 법인경영 3대 동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여 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정책·제도) 농업법인 제도는 “농업법인 체제의 활성화” vs “왜곡된 농업자원 활용의 방어” 라는 이중(二重)의 과제 속에서 움직여 왔음.
- (경제여건) 왜곡된 농업자원 활용 문제는 급변하는 농지가격 등 거시적인 경제 여건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농업경영 내부) 농업경영 내부에서 보면, 성장하는 융복합·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하면서 규모화·전문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농업·농촌 특유의 공동체 사업의 틀로서 농업법인 체제를 받아들여 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음.

나. 극복해야 할 과제

□ 문제 의식

- 농가 경영의 보완, 협업과 결합을 통한 규모화·전문화의 추구가 농업법인 구성의 기본적인 목표·원리에 충실한 경우 건설한 농업주체로 성장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음.
- 농업법인 직영의 농업생산은 육묘장, 시설하우스, 축산 (한우·양돈 등과 조사료·사료, 곤충 신사업) 등 규모화·특화된 사업체로 발전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인프라와 독특한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안정경영을 달성하고 있음.

[그림 23] 농업법인 운영체계에 대한 영향 요소와 극복 과제



- 본 현장조사 사례 농업법인들도 평균 15.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생산·가공·유통·서비스 등 복합된 영역에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만, 본 연구의 분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 보면, 외형적인 농업법인의 성과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농업법인의 내적 운영체계의 정비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역사적 전개 경험 속에서 축적된 특유의 상황들을 극복해야 하며, 농업법인 제도·정책적 개선과 함께 실제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이해와 변화가 필요함.

□ (극복과제 1) 농업법인 목표의 다기성(多岐性)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의 고도화라는 목표를 갖추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
- 농가간 결합, 혹은 농업경영 내부의 조직력을 갖춘 법인 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경영적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이외에도 농촌공동체의 공동사업 수행, 개별 농가의 차별적인 사업영역 확보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농지를 포함하는 보유 자산의 관리, 마을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법인 구성 등의 다양한 농업법인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농업법인은 다양한 농업·농촌 현장의 요구와 목표를 수용하면서도 농업경영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한 주체로서 발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농가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시설·축산과 더불어 논, 노지, 과수 등 농업생산 전문경영 체제를 모색.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다각화에 적합한 법인 경영체제를 확보해야 함.

□ (극복과제 2) 소규모성과 외부여건 변화 대응력 확충

- 농업법인의 규모 분포가 매우 다양하며, 소규모인 경우에는 개인 경영에 가까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영주 역량과 외부 여건 대응에 취약한 경우들이 있었음.
 - 농업법인 중 매출규모가 1~2억 이내의 소규모인 경우도 많으며, 현장 조사에서는 외부 여건 변화의 변동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등 문제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었음.
- 반면, 적은 규모이면서도 외부 충격·영향을 극복하면서 건실하게 운영하는 우수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음.
- 결국 외부 충격·영향, 리스크 대응력은 이에 대비하는 대표자의 리더십과 참여자들의 위험 분산, 역할 분담 방식의 확립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조직경영의 장점을 살려서 시장·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정책·지역 협력망을 바탕으로 강한 경영체제로 발전해야 함.

□ (극복과제 3) 정책의존성에서 자립적 경영혁신으로 전환

-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 전후로부터 정부는 농업법인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경영체 중심의 투융자를 전개하였음.
 - 논·쌀 부문의 전업농 육성과 함께 원예·축산과 유통·가공 등에서는 조직 경영체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업법인에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였음.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 생산·유통·가공 관련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 되고, 농촌 분야에서는 농촌마을개발 사업 등 중·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 농산물 유통·가공은 가장 보편화된 농업법인의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확충사업과 연결되어 있음.
 - 농촌마을 공동체의 농업법인의 경우 농촌개발 사업의 수혜를 받아 농촌경제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여 왔음.
- 정책지원을 농업법인으로 집중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되는 인프라를 “공공(公共)” “공유(公有)” 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규모화·전문화된 경영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농업법인이 기존 정책적 투자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보하여 왔다면, 이제는 이를 경영혁신으로 연결하여 자립적인 경영체제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극복과제 4) 출자자, 경영참여자의 내실있는 구성

- 농업법인 출자자 구성과 관련 법인 경영 참여·이용보다는 법인 설립을 위해 갖춘 형식적인 경우들도 존재함.
 - 형식적인 출자자 구성은 농업법인의 제도적 요건은 갖추게 되지만, 농업법인이 담당해야 하는 목표와 사업성과의 도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사례를 통해 이해하였음.
- 농업법인의 구성주체 문제는 원론적인 것이면서도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은 생산자조직, 농촌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화된 자원의 운용을 위해 농업관련 산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까지도 포함하는 폭 넓은 주체의 참여도 필요함.
- 이미 제도적으로는 출자자 구성이 농업인, 비농업인에게 개방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 구성 방식을 극복하여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 주체간의 권한·역할의 배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우수사례, 문제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철저하고 책임있는 출자자 구성 단계에서부터 농업법인의 지속성이 확보되는 것을 파악하였음.

□ (극복과제 5) 농가경영과 농업법인 경영의 분리와 체계화

- 현장조사에서 파악한 특징으로서, 농업법인의 지속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개인 농가의 필요에 의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었음.
 - 농업구성원의 견실한 결합으로 조직경영 체제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농업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방식으로 농업법인이 전개되고 있음.
- 가족 법인의 경우에도 선대의 법인과 후대의 법인이 추가되고 가족경영과 구분되지 않는 사례들에 주목하였음.
 -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승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음.
 - 반면, 우리 현실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선대(先代) 농가·법인과 별도로 후대(後代)가 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음.
- 농가(가족농) 경영과 구분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농업법인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결국 농업법인 경영의 체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농업농촌의 여건을 보면, 귀농·귀촌인과 지역협업 경영 등 다양한 승계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 농가 경영주 개인의 경영을 법인으로 조직화하고, 미래 세대의 참여와 승계로 이어지는 연찬륙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3. 결론

- 농업법인 제도는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로서 농업생산과 농업관련 산업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 WTO 체제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1994년 이후의 농업투융자사업과 결합하여 한국 농업의 규모확대와 고도화된 농업경영 체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음.
 - 특히, 시설농업·축산 중심의 농업생산 규모화, 전문화와 농산물 산지유통, 농촌융복합 사업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법인 체제가 가지는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음.
 - 농가 중심의 농업경영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법인화·조직화를 통하여 농업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경영 체제가 필요함.

- 또한,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후속) 세대로의 농업 경영 승계에 활용할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음.
- 본 분석·조사에서 농업법인 경영체제는 변화하는 시장·경제 여건, 그리고 농업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하였음.
 - 특히, 규모화된 농업생산과 유통·가공 및 농촌관광·휴양 등 부가가치화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 다만, 보다 철저한 법인 구성과 내적 혁신이 필요하며, 자립적인 조직 관리와 체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 농업법인 체제는 미래 농업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주체로서 가능성을 확대해야 하며, 농업내외부의 자원을 결집하고, 운영주체의 혁신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농업법인은 타 법인과 달리 조세·정책 측면의 유리성, 농지 소유 가능성을 갖춘 유리한 체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유리성이 농업 내외부 주체들의 참여와 책임, 제도·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발전의 길을 열어가야 함.
- 농업법인 제도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외부 여건과 내부 운영체계 그리고 제도가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의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 연구자료

- 김경환 · 김진희 · 허선영 · 박형곤 · 박성주 · 박찬영 · 서정석 · 조성호 (2021), 『어업법인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 지역농업 네트워크영남협동조합
- 김명아 · 김은정 · 장원규 · 홍성민 · 윤창호 (2020), 『농업법인 제도 정비 및 관리 체계화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 김정호 (2012), 『농업CEO를 위하여 - 농업법인은 한국농업의 활로』, 개정 증보판, 도서출판 목근통
- 김정호 (2015),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사)환경농업연구원
- 나채준 · 왕승혜 · 김수홍 (2017),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업 · 농촌 7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찬
- 마상진 · 안석 · 김유나 (2020),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R9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 · 임지은 (2014), 『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 분석』, P1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석 · 김인석 · 서장원 · 이연옥 · 김다혜 (2017),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후속 조치에 관한 기초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전남대학교
- 장민기 (2019). “미래농업을 위한 농업법인 제도의 활용: 한국 · 일본 · 프랑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농정연구』 69호: 171-200
- 장민기 · 홍지영 · 유리나 · 정성웅. 2019. 『농업법인의 실태분석 및 경영진단 · 평가 모형개발』. 농정연구센터 · 농촌진흥청
- 통계청 (2019), 『농업법인조사 - 2019년 수시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 홍범교 · 성명재 · 이동규 · 서주영 (2021),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 외국 통계자료

- Ministre de l' Agriculture et de l' Alimentation, Enquête sur la structure des exploitations agricoles(2016)
- 農林水産省, 農林業センサス
(<https://www.maff.go.jp/j/tokei/kouhyou/noucen/index.html>)

□ 통계자료 및 정책자료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kosis.kr, 농업법인조사 [통계포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법인조사보고서 (2015, 2016, 2017, 2018, 2019년도)
- 농림수산부(1994.9.),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 세부실천계획

[부록] 현장방문 조사표

(코드번호 : 0-0-0-0)

인터뷰 일시	2021. . . ____시
인터뷰 대상	농업법인명 _____ / 직책 _____ / 성명 _____
	농업법인명 _____ / 직책 _____ / 성명 _____

① 법인 설립 이유 및 주요 연혁

<p>■ 법인 설립 시기, 설립 이유 및 주요 연혁(출자자, 회원 변화 등), 현재까지 대표자의 농업인 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면담조사 결과</p>

② 주요 사업내용

구분	설립초기(년)	16년(현황조사)	19년(현황조사)	최근(2021년)
농업생산수입 (품목/규모)	면담조사 결과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면담조사 결과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가공/유통/서비스/관광.기타)	면담조사 결과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면담조사 결과

<p>■ 주요 사업체계(법인의 직접 생산 여부) 및 사업내용(사업유형, 매출 등) 변화 내용/이유</p> <p style="text-align: center;">면담조사 결과(주요 사업체계는 품목/사업별로 구분하여 도식화하여 결과 작성)</p>
--

③ 법인 소유/임대 농지 및 농업시설·시설

구분	설립초기(년)	19년(현황조사)	최근(2021년)
농지 (소유/임대)	면담조사 결과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면담조사 결과
농업시설 (소유/임대)	면담조사 결과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면담조사 결과
장비 및 기타 (소유/임대)	면담조사 결과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면담조사 결과

<p>■ 농지/농업시설/장비 등 구비 이유, 구비 방법(정책사업 등), 활용 내용(공동vs개별), 향후 확대/축소 의견(이유)</p> <p>면담조사 결과</p>

④ 법인 출자

구분	설립초기(년)	16년(현황조사)	19년(현황조사)	최근(2021년)
출자자수 (농업인vs비농업인)	면담조사 결과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면담조사 결과
출자금 (농업인vs비농업인)	면담조사 결과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면담조사 결과

<p>■ 출자자수/출자금 변동 이유, 출자자간의 관계, 비농업인 출자 이유 및 구성(개인/법인/전문투자회사), 법인간 네트워크 내용(사업적 협력 관계의 타법인, 타법인 출자 여부/이유 등), 관련 제도상의 개선 사항</p> <p>+ 비농업인 출자자 수용에 대한 의견, 출자금과 농지/시설/장비 보유와의 관계, 비농업인 출자자 배당 등</p> <p>면담조사 결과</p>

[참고] 제도 변화	비농업인 출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6) 총출자액의 1/2(단, 주식회사 1/3) → ('99) 총출자액의 1/2 → ('04) 총출자액의 3/4 → ('09) 총출자액의 9/10 → ('12) 금액 기준 추가 (80억원 이상 출자 시 8억원 제외한 금액)
	농지소유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소유불가 → ('96) 합명·합자유한회사 허용(농업인 출자 1/2 초과, 대표자 농업인, 업무집행권자 1/2 농업인), 주식회사 불허 → ('02) 주식회사 농지소유 허용 → ('05) 농업인 출자 1/2 초과 규정 폐지 → ('09) 대표자 농업인 규정 폐지, 업무집행권자 요건 완화(1/2 → 1/3)

* ③ 농지 및 농업시설·시설, ④ 출자 관련 제도 변화 시점 등을 연계하여 조사

⑤ 법인 종사자

구분	설립초기(년)	16년(현황조사)	19년(현황조사)	최근(2021년)
전체 종사자	면담조사 결과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면담조사 결과
종사자 비중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_1년) (일용근로자_1개월)	면담조사 결과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면담조사 결과

■ 법인 종사자 변화 이유(사업 내용 및 체계 변화 연계 등), 외국인노동자 비율, 관련 제도상의 개선 사항

면담조사 결과

⑥ 경영

구분	설립초기(년)	19년(현황조사)	최근(2021년)
회계관리 (직접/위탁 등)	면담조사 결과	면담조사 결과	면담조사 결과
경영실적(실제/회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익처분 방법_비농업인 출자자)	면담조사 결과	기 조사결과 첨부 (면담조사 결과 보완)	면담조사 결과

<p>■ 경영상의 주요 변화 이유(사업 내용 및 체계 변화 연계 등), 관련 제도상의 개선 사항</p>
<p>면담조사 결과</p>

⑦ 그 외 농업법인 운영 성과

<p>■ 농업법인 운영에 따른 주요 성과(공동영농을 통한 효율화/영농지속, 장학금 등 지역사회 기여, 마을 유지/발전 등)</p>
<p>면담조사 결과</p>

⑧ 농업법인의 불법 운영 사례

<p>■ 농업법인 운영에 있어서, 관련 제도를 벗어나 운영한 주위 사례가 있다면</p>
<p>면담조사 결과(농업법인 매개 농지 자산화/투기, 중대기업의 농업법인 자회사화/농지 매입, 지원사업을 통한 시설장비의 개인 사유화 등)</p>

⑨ 농어업경영체육성법 개정 사항[21.07.23.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에 대한 의견

<p>■ 제안이유 : 농업법인이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p> <p>■ 주요 내용 : ①지자체가 법인의 사업범위·설립요건 등의 준수를 확인하는 사전신고제 도입, ②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명시, ③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 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④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법인 대표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p> <p>■ 개정 사항 인지 여부</p>
<p>면담조사 결과</p>

10 농업법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

면담조사 결과

농업법인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 및 운영실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



사단
법인 **농정연구센터**
CENTER FOR FOOD, AGRICULTURAL & RURAL POLICY

